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유자차

Citron Tea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발맞춰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 4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대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를 타결 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FTA 체결국과 교역하면서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을 하고도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FTA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이 FTA 협정별로 대상 품목에 대한 상이한 양허대상 및 관세율, 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FTA 협상에 대비하여 「품목별 FTA활용 매뉴얼」 책자 제작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농식품 기업인 여러분에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 1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김 재 수



CONTENTS

I. 유자차와 FTA • 2

1. 유자차의 정의와 관련 음료 • 2

가. 정의 • 2

나. 유자 관련 음료의 종류 • 3

2. 유자차 제품의 산업 현황·수출시장 동향 • 4

가. 산업 현황 • 4

나. 수출시장 동향 • 5

3. 유자차 산업의 FTA 활용 현황 • 8

가. 유자차 수출 주요 FTA 협정 상대국 수출 동향 • 8

나. 유자차와 FTA 전망 • 8

II. 단계별 FTA 활용 절차 • 12

1. 개요 • 12

2. 활용 절차 • 12

III. FTA 준비하기 • 16

1. 협정국가 확인 (STEP 1) • 16

가. 개요 • 16

나. 협정국가 확인 방법 • 18

2. 품목분류 (STEP 2) • 19

가. 개요 • 19

나. HS CODE 형태 • 20

다. 확인 방법 • 20

라. 유자음료 관련 품목분류 • 24

3. 양허대상 여부 및 세율 확인 (STEP 3) • 33

- 가. 개요 • 33
- 나. 확인 방법 • 33
- 다. 유자차(2008.30)의 수출세율 확인 • 36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STEP 4) • 37

- 가. 개요 • 37
- 나. 원산지결정기준 • 37
- 다. 확인 방법 • 42
- 라. 유자엑상차의 원산지결정기준 • 46

IV. FTA 활용하기 • 48

1.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STEP 5) • 48

- 가.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BOM) • 48
- 나. 제조공정도 • 51
- 다. 원재료 원산지 / 구매 증빙서류 • 54
- 라. 원산지소명서 • 60

2. 원산지 판정 (STEP 6) • 62

- 가. 제품정보 • 62
- 나. 유자엑상차의 원산지결정기준 • 63
- 다. 원산지 판정 Simulation • 64

3.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STEP 7) • 70

- 가. 기관발급 • 70
- 나. 자율발급 • 76
- 다. 원산지포괄확인서 • 83

V. FTA 사후관리하기 • 86

1. 서류 관리 (STEP 8) • 86

- 가. 개요 • 86
- 나. 보관서류 • 87
- 다. 서류관리 방법 • 88

2. 검증대응 (STEP 9) • 89

- 가. 개요 • 89
- 나. 검증방법 • 89
- 다. 검증대응 • 90

VI. 자주 묻는 Q&A • 100

- FTA가 발효되면, 관세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 100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 101
-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무엇인데, 왜 우리가 작성해야 하나요? • 103
-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4
- 원산지 사후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06
- 뒤늦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행, 사후적용이 될 수 있나요? • 108
- 사세 확장으로 미국과 EU로 수출이 진행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판정 받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 판정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도 무방하나요? • 110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 112
- 농산물과 농산물을 제조, 가공한 물품의 품목 분류 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14

- 농산물을 취급하는 1차 공급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한데, 이러한 절차 없이 원산지 확인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 115



I

Chapter

유자차와 FTA



I. 유자차와 FTA



1. 유자차의 정의와 관련 음료

가. 정의

유자는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하는데, 한국산이 가장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껍다. 국내 주요산지로는 전라남도 고흥·완도·장흥·진도와 경상남도 거제·남해·통영 등이다. 주요성분을 살펴보면 비타민 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이 들어 있어 감기와 피부미용에 좋고, 노화와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이 많이 들어 있다.

유자는 주로 얇게 저며 차로 만들거나 소금이나 설탕에 절임을 하여 먹는다. 과육은 잼·젤리·양갱 등을 만들고 즙으로는 식초나 음료를 만든다. 껍질은 얼려 진공건조한 뒤 즉석식품으로 이용하거나 가루를 내어 향신료로 쓰고, 종자는 기름을 짜서 식용유나 화장품용 향료로 쓰거나 신경통·관절염 약으로 쓴다. 술을 담그기도 하는데, 기관지 천식과 기침·가래를 없애는 데 특히 효과가 있다. 이러한 유자 관련 제품 중에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수출이 가장 많은 것이 유자차이다. 이밖에도 유자를 이용한 음료에는 유자주스, 유자즙, 유자소주 등이 있다.



[유자액상차]

나. 유자 관련 음료의 종류

① 유자주스



② 유자음료



③ 유자즙



④ 유자소주



2. 유자차 제품의 산업 현황·수출시장 동향

가. 산업 현황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국내 소비 및 해외 수출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기후 조건 등 생산지역 확대의 한계 및 유자나무의 노령화로 2009년부터 정체 추세에 있다. 전라남도 고흥, 완도, 장흥, 진도 등이 주산지이며, 특히 고흥지역은 전국 유자 재배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유자의 생산 현황과 유형별 가공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유자 생산 현황]

구분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배면적	ha	1,150	1,239	1,157	1,105	1,049	920
생산량	톤	15,146	13,140	12,100	10,642	9,746	13,053

출처: 통계청(KOSTAT.go.kr)

[유형별 가공 실적]

(단위: 톤)

	합계	주스	넥타	잼	술	식초	음료 및 기타
2007년	11,545	150	-	165	38	-	11,192
2008년	12,528	58	-	2	28	-	12,440
2009년	15,996	3	-	10	5	-	15,978
2010년	15,616	3	-	4	17	-	15,592
2011년	12,197	32	-	3	14	-	12,149
2012년	18,752	8,329	-	77	10	-	10,338
2013년	14,079	3,505	12	49	3	-	10,511
2014년	13,053	3,911	12	13	-	-	8,288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4 과실류 가공 현황

나. 수출시장 동향

1) 수출 동향

- 수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42,950천 달러
- 수입은 없음
- 무역흑자는 42,950천 달러 기록
- 對 중국 수출(23,427천불)이 1위를 기록, 전체 수출의 54%를 차지
- 일본, 홍콩, 대만의 수출액 합계가 전체수출 실적의 39.7%를 차지
- 동 기간 중국의 수출량은 2013년 대비 10.50%, 홍콩은 6.28%가 증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중국 6.11%, 홍콩 5.34%가 증가하여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확대됨
- 일본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기복을 보이는데 반해,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엔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일 수출 감소에도 중국, 홍콩 등 중화권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전체수출 실적은 43백만 달러 규모의 전년도 수준 유지

[연도별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2007~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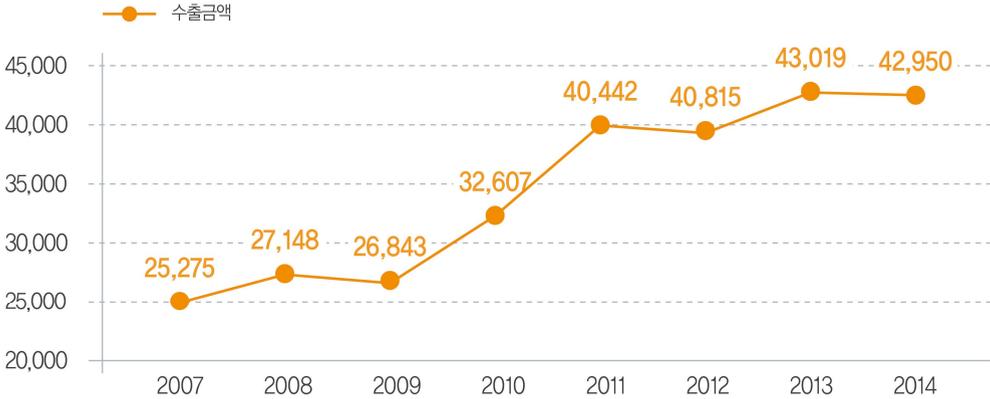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2007년	25,275	-	-	-	25,275
2008년	27,148	7.4(▲)	-	13,333(▲)	27,148
2009년	26,843	1.1(▼)	-	100(▼)	26,843
2010년	32,607	21.5(▲)	69	-	32,538
2011년	40,442	24(▲)	-	99.9(▼)	40,442
2012년	40,815	0.9(▲)	31	86,338(▲)	40,784
2013년	43,019	5.4(▲)	10	67.7(▼)	43,009
2014년	42,950	0.2(▼)	-	99.1(▼)	42,950

출처: 관세청 수출입 통계(2015)

[유자차 수출 실적 현황(2007~2014)]

(단위: 천 달러)



2) 주요 수출국가

- 중국은 전체 수출 중 약 54%를 차지하는 유자차 최대 수출시장으로 엽차류 중심 시장에서 원조 과실차라는 유자차의 차별성과 함께 최근 한류 붐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3.56% 증가한 14,713톤의 수출물량을 기록
- 일본시장은 엔화 약세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량 감소 및 반한감정 등 양국 관계 소원화의 영향으로 6백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중화권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2014년에는 수출 상위 3개국 이 전체 수출의 84.1%를 차지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 현황(2013~2014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중국	22,078	51.3%	중국	23,427	54.5%	6.1%▲
2	일본	8,642	20.1%	일본	6,252	14.6%	27.7%▼
3	홍콩	5,464	12.7%	홍콩	5,756	13.4%	5.3%▲
4	대만	3,049	7.1%	대만	3,064	7.1%	0.5%▲
5	미국	1,922	4.5%	미국	1,978	4.6%	2.9%▲
6	캐나다	498	1.2%	싱가포르	484	1.1%	2.8%▼
7	싱가포르	344	0.8%	캐나다	427	1.0%	24.1%▲
8	말레이시아	186	0.4%	마카오	247	0.6%	32.8%▲
9	마카오	167	0.4%	호주	227	0.5%	35.9%▲
10	호주	130	0.3%	말레이시아	173	0.4%	33.1%▲
11	베트남	86	0.2%	몽골	144	0.3%	67.4%▲
12	러시아 연방	68	0.2%	러시아 연방	107	0.2%	57.4%▲
13	영국	63	0.1%	베트남	102	0.2%	61.9%▲
14	몽골	59	0.1%	카자흐	96	0.2%	62.7%▲
15	프랑스	48	0.1%	필리핀	94	0.2%	95.8%▲
16	카자흐	46	0.1%	프랑스	88	0.2%	91.3%▲
17	인도네시아	44	0.1%	파키스탄	47	0.1%	6.8%▲
18	네덜란드	37	0.1%	네덜란드	42	0.1%	13.5%▲
19	뉴질랜드	25	0.1%	인도네시아	42	0.1%	68.0%▲
20	남아프리카공화국	18	0.0%	영국	39	0.1%	116.7%▼

출처: 관세청 수출입 통계(2015)

3. 유자차 산업의 FTA 활용 현황

가. 유자차 수출 주요 FTA 협정 상대국 수출 동향

유자차의 상위 7개 FTA 협정 상대국으로의 수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4년 상위 7개 FTA 협정 상대국으로의 수출은 2013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FTA 협정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유자차의 비율은 7~8%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2014년 유자차 전체 수출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FTA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자차 주요 FTA 협정 상대국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국가명	금액	점유율	
1	미국	1,922	4.5%	미국	1,978	4.6%	2.9%▲
2	캐나다	498	1.2%	싱가포르	484	1.1%	2.8%▼
3	싱가포르	344	0.8%	캐나다	427	1.0%	24.1%▲
4	말레이시아	186	0.4%	호주	227	0.5%	35.9%▲
5	호주	130	0.3%	말레이시아	173	0.4%	33.1%▲
6	베트남	86	0.2%	베트남	102	0.2%	61.9%▲
7	인도네시아	44	0.1%	인도네시아	42	0.1%	68.0%▲
합계	주요 협정국 합계	3,210	7.5%	주요 협정국 합계	3,433	7.9%	11.6%▲

출처: 관세청 수출입 통계(2015)

나. 유자차와 FTA 전망

우리나라 유자차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그 뒤로는 일본, 홍콩, 대만, 미국 순이다. 특히 중국은 유자 원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 생산한 유자차 생산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반한 감정이 더해져 대일 수출액과 물량이 최근 감소하였다. 미국은 수입업체의 마케팅 확대에 따른 인지도 제고, 현지 및 아시안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였다. 유자차의 주요 수출국 상위 4개국은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상위 국가들과 FTA 협정이 체결되면 유자차의 수출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 유자차와 한·중 FTA

① 중국의 관세양허 스케줄

품명	HS CODE	세율 비교	
		기존(실행)	양허유형
액상차	2008.30	20	15,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2106.90	35	20
주스	2009.31	18	15
	2009.39	18	15
음료, 즙	2202.90	35	20
소주	2208.90	10	20

‘양허유형15’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되고, ‘양허유형20’은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된다. 따라서 유자 관련 제품들은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15년 또는 20년이 경과하면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② 유자차와 한·중 FTA의 전망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 유차자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FTA 발효 후 20년이 지나면 관세가 완전철폐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 발효 시 한국산 유자차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유자액상차는 중국에서 HS2106.90호(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분류되는데, 35%의 세율이 20년에 걸쳐 폐지되므로 FTA의 효과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2) 유자차와 기타 FTA

① 한·베트남 FTA

아직까지 발효는 되지 않았으나, 이미 협상이 타결된 FTA로는 한·중 FTA 외에도 한·베트남 FTA가 있다. 동 FTA는 2015년 5월 5일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베트남과 중국 국민의 기호가 비슷한 점, 현재 수출물량이 많지 않으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FTA를 활용한 유자차의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타 FTA 전망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유자차 수출 상대국(2014년 기준 점유율 14.6%)이다.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한·중·일 FTA의 6차 협상이 2014년 11월에 있었고, RCEP(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6차 협상이 2014년 12월에 있어 FTA 협상 체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유자차의 수출은 일본 내에 반한감정이 약해지면서 FTA가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한국 유자의 일본 유자에 대한 품질의 상대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수출시장으로는 인도네시아와의 FTA 7차 협상이 2014년 2월에 있어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증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한편(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 2015년 10월 세계 GDP 중 38%의 거대 지역협정인 TPP 협상이 타결되어 농업 분야를 포함해 일본과 경쟁 열위에 있는 제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유자와 유자제품의 품질은 어느 나라의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만큼, 좀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Chapter

단계별 FTA 활용 절차



II. 단계별 FTA 활용 절차



1. 개요

FTA 활용을 위해서는 ① FTA 협정국 확인 ② 품목분류 ③ 양허대상 여부 및 세율 확인 ④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⑤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⑥ 원산지 판정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⑧ 서류 관리 ⑨ 검증대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활용 절차

수출업체 / 국내 공급업체 여부에 따라 세부 프로세스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FTA 활용 절차]

준비하기



[Step 1] FTA 협정국 확인

-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과 체결한 FTA 협정 적용 대상 국가인지 확인 필요

[Step 2] 품목분류(HS코드 확인)

- 최종수출 / 납품하는 완제품(및 원재료)의 HS CODE 확인 필요

[Step 3] 양허대상 여부 및 세율 확인

- HS CODE별로 FTA 상대국 수입세율 / 양허 스케줄 확인 필요

[Step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협정별, HS CODE 6단위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

활용하기



[Step 5]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소명 입증서류 구비

[Step 6] 원산지 판정

- 최종수출 / 납품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정 필요

[Step 7]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관리하기



[Step 8] 서류 관리

- 원산지 관련 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Step 9] 검증대응

- 향후 수출입국 세관 사후검증에 대비

■ 내수업체

- 1
 - 원재료 매입, 제조가공
- 2
 - 기초자료 준비
 - 완제품 HS코드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BOM / 제조공정도 작성
- 3
 - 원산지 판정: 완전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4
 - 원산지확인서 발급
- 5
 - 서류 관리 및 검증대비

■ 수출업체

- 1
 - 원재료 매입, 가공
- 2
 - 기초자료 준비
 - 완제품 HS코드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BOM / 제조공정도 작성
- 3
 - 원산지 판정: 완전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4
 - 원산지증명서 발급
- 5
 - 해외 수입자 관세혜택
- 6
 - 서류관리 및 검증대비



III

Chapter

FTA
준비하기



Ⅲ. FTA 준비하기



1. 협정국가 확인 (STEP 1)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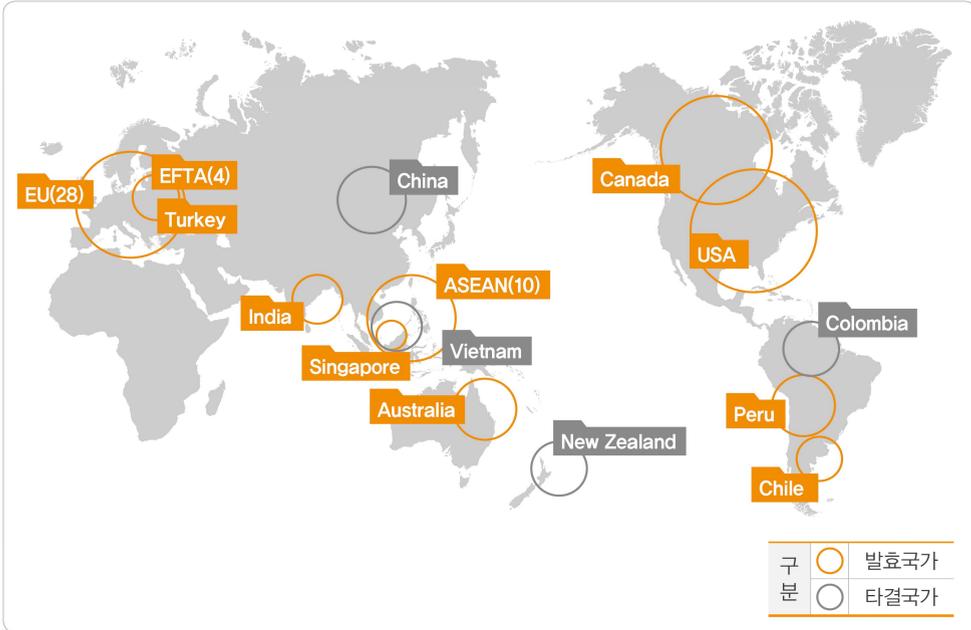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무역하는 국가 간에 FTA 협정이 발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현재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며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협정 상대국	발효 현황
 칠레	2004년 4월 1일 발효
 싱가포르	2006년 3월 2일 발효
 EFTA(4개국)	2006년 9월 1일 발효(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아세안(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2007년 6월 1일), 베트남(2007년 6월 29일), 미얀마(2007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2007년 12월 7일), 필리핀(2008년 1월 1일), 브루나이(2008년 7월 1일), 라오스(2008년 10월 1일), 캄보디아(2008년 11월 1일), 태국(2010년 1월 1일) 발효

 인도	2010년 1월 1일 발효
 EU(28개국)	2011년 7월 1일 발효(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013년 추가), 총 28개국)
 페루	2011년 8월 1일 발효
 미국	2012년 3월 15일 발효
 터키	2013년 5월 1일 발효
 호주	2014년 12월 12일 발효
 캐나다	2015년 1월 1일 발효
 중국	2014년 11월 10일 타결, 2016년 발효 예정
 베트남	2014년 12월 10일 타결, 2016년 발효 예정

추진 현황	상대국
타결	협상완료 국가 : 콜롬비아(2012년 6월 25일 타결), 중국(2014년 11월 10일 타결), 베트남(2014년 12월 10일 타결)
협상 중	멕시코, GCC,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 한·중·일, RCEP
여건 조성 및 공동연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러시아, MERCOSUR, 이스라엘, SACU, 말레이시아

[FTA 협정 발효 및 체결 국가(2015년 7월 현재 기준)]



나. 협정국가 확인 방법

1) FTA 종합지원센터 접속 후 'FTA 협정정보 / 관세율'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Navigation Bar:** FTA1380 상담, FTA Flow/지원안내, FTA 활용, **FTA 협정정보/관세율** (highlighted), 차이나데스크, FTA 소식, 자료실, 센터소개.
- FTA Flow Section:** Includes icons for 효과분석, 세번확인 HS코드, 원부자재 품목분류, 원산지확인서 제출, 원산지결정 기준 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시스템, 증명서발급 및 서류보관, 수입자에게 제공.
- 자주 찾는 서비스 (Frequently Used Services):**
 - 차이나데스크
 - 비관세장벽포털 트레이드 내비
 - 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 FTA 센터안내 (홍보브로슈어)
 - FTA 전문가
 - 사후검증 예로신고
- FTA1380 상담 (FTA1380 Consultation):**
 - 업종별 상담
 - 협정별 상담
 - 예로별 상담
- FTA 지원사업안내 (FTA Support Program Guide):**
 - 지원사업통합안내
 - 사후검증 지원센터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클릭



2. 품목분류 (STEP 2)

가. 개요

개념	품목분류	국제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적절한 HS CODE에 분류하는 것
	HS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6단위까지 국제적 통일임
의의	HS CODE에 따라 양허대상 및 원산지판정기준이 결정	
방법	관련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확인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청 등 관련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함으로써 유권 해석을 받을 수 있다.

나. HS CODE 형태

HS CODE는 다음과 같이 류(Chapter, 2단위), 호(Heading, 4단위), 소호(Sub-Heading, 6단위)로 구성되며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20				채소, 과실, 견과류나 식물의 그밖의 부분의 조제품
	08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감귤류 과실
			1000	유자
류				
호				
소호				

- * 류: 앞2자리를 의미-HS2005.99-1000호 중 20이 '류'를 의미
- * 호: 앞4자리를 의미-HS2005.99-1000호 중 2005이 '호'를 의미
- * 소호: 앞6자리를 의미-HS2005.99-1000호 중 2005.99이 '소호'를 의미

다. 확인 방법

1) 관세청 홈페이지 활용

- ①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접속
- ② '관세행정안내' 클릭
- ③ '품목분류 / 관세평가' 클릭



④ 새로운 페이지 하단의 'HS 품목분류 검색' 클릭



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활용

①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UNI-PASS, portal.customs.go.kr) 접속

② 우측 상단의 '품목분류 검색' 클릭



③ 검색 창에 물품명(유자) 입력 또는 박스에서 대분류를 선택하여 검색

UNI-PASS 관세청 홈페이지 | 업무처리 | 정보제공 | 고객지원 | 통관단일창구

아이디: [] 비밀번호: [] 로그인

Home > 정보제공 > 품목분류 > 품목분류 검색

통합검색 | 관세표표 | 해설서 | 분류사례 | 상품인덱스 | WCO 의견서 | 분석회보서

통합검색 | 이동 | 유자 | 검색 | 이력 | 검색도움말 | 외국분류사례검색 | 이동 | 외국전제품 | 법령검색

검색범위 | 관세표표 | 해설서 | 분류사례 | 상품인덱스 | WCO의견서 | 분석회보서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패류	낙농품, 조만, 천연물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 쫄	채소	과실, 견과류	커피, 차, 향신료
10	곡물	곡물의 분과 조분밀가루, 전분	채유용 종자, 인삼	식물성 액스	기타 식물성 생산품	동식물성 유지	육-어류 조제품	달류, 설탕과자	코코아, 초코렛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기타의 조제품	음료, 주류, 식초	조제사료	담배	토석류, 소금	광, 슬랙, 회	광물성 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30	의약품품	비료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	향료, 화장품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화약류, 성냥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과 그제품
40	고무와 그제품	원피, 가죽	가죽제품	모피, 모피제품	목재, 목탄	코르크, 질	조물재료의 제품	펄프	지와라지	서적, 신문인쇄물

④ 검색된 물품의 10단위 HS CODE 확인

UNI-PASS 관세청 홈페이지 | 업무처리 | 정보제공 | 고객지원 | 통관단일창구

이용안내 | 이용신청 | 공인인증서 | 업무안내 | 민원안내 | e-Learning | 신고도우미 | 부가서비스 | 자료실 | 전자문서표준 | 반부패 Hot-Line

아이디: [] 비밀번호: [] 로그인

Home > 정보제공 > 품목분류 > 품목분류 검색

통합검색 | 관세표표 | 해설서 | 분류사례 | 상품인덱스 | WCO 의견서 | 분석회보서

통합검색 | 이동 | 유자 | 검색 | 이력 | 검색도움말 | 외국분류사례검색 | 이동 | 외국전제품 | 법령검색

검색범위 | 관세표표 | 해설서 | 분류사례 | 상품인덱스 | WCO의견서 | 분석회보서

검색옵션 | 결과내 재검색 | 기본검색

통합검색 ('유자' 에 대한 검색 결과: 총 28 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관세표표 (총 4건 검색) 더많은 결과보기

HS	한글품명	영문품명	정확도
2008301000	유자	Citrus Junos	83.5%
731300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매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Barbed wire of iron or steel; twisted hoop or single flat wire, barbed or not, and loosely twisted double wire, of a kind used for fencing, of iron or steel.	81.7%
7313001000	유자선(有刺鐵)	Barbed iron or steel wire	79.7%
7313009000	기타	Other	79.7%

해설서 (총 3건 검색) 더많은 결과보기

구분	HS	해설서	해설	정확도
			72.17 - 철 또는 비합금간의 선(+)7217.10 -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	

⑤ HS CODE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호(소호)의 해설’ 클릭

관세청 홈페이지 | 업무처리 | 정보제공 | 고객지원 | 통관단입창구

이용안내 | 이용신청 | 공인인증서 | 업무안내 | 민원안내 | e-Learning | 신고도우미 | 부가서비스 | 자료실 | 전자문서표준 | 반부패 Hot-Line

Home > 정보제공 > 품목분류 > 품목분류 검색

통합검색 | 관세표 | 해설서 | 분류사례 | 상품인덱스 | WCO 의견서 | 분석회보서

관세표 | 이동 | 검색 | 이력 | 검색도움말 | 외국분류사례검색 | 이동 | 외국관세율 | 법령검색

검색범위 HS 한글품명 영문품명

검색옵션 결과내 재검색 기본검색 | 검색

관세표 ('유자'에 대한 검색 결과: 총 4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HS	한글품명	영문품명
2008301000	유자 Citrus junos	
731300	철강제의 유지선, 철강제의 대 또는 링선 중 끈 것(유자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느슨하게 끈 2중 선으로서 둘라용으로 사용하는 것	Barbed wire of iron or steel; twisted hoop or single flat wire, barbed or not, and loosely twisted double wire, of a kind used for fencing, of iron or steel.

통칙 부해설 류해설 호(소호)해설 FTA별원산지기준 영문보기 출력

HS	200830-1000
품명	유자
수량단위	kg
원산지표시	대상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적정표시방법	대상 [적정표시방법]

관세				[관세를 적용순위]	
관세구분	관세율	단위당세액	기준가격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FEU1	15	0.0	0.0	2015.01.01	2015.06.30
FUS1	27	0.0	0.0	2015.01.01	2015.12.31

⑥ 호(소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물품의 HS CODE가 맞는지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 | 업무처리 | 정보제공 | 고객지원 | 통관단입창구

이용안내 | 이용신청 | 공인인증서 | 업무안내 | 민원안내 | e-Learning | 신고도우미 | 부가서비스 | 자료실 | 전자문서표준 | 반부패 Hot-Line

Home > 정보제공 > 품목분류 > 품목분류 검색

통합검색 | 관세표 | 해설서 | 분류사례 | 상품인덱스 | WCO 의견서 | 분석회보서

검색도움말 | 외국분류사례검색 | 이동 | 외국관세율 | 법령검색

부해설 류해설 호(소호)해설 FTA별원산지기준 영문보기 출력

20.08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살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11 -- 낙화생

2008.19 -- 기타(호환물을 포함한다)

2008.20 - 파인애플

2008.30 - 감귤류 과실

2008.40 - 배

2008.50 - 사과

2008.60 - 버찌

2008.70 - 복숭아(넥타린을 포함한다.)

2008.80 - 초분류 딸기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2008.91 -- 딸 하트

2008.93 -- 크랜베리(바치니움 머크로카르폰, 바치니움 옥시코코스, 바치니움 비티스-이디에아)

2008.97 -- 혼합물

2008.99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패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HS CODE는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홈페이지 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 유자음료 관련 품목분류

1) 제품별 분류

① 유자엑상차

유자당절입, 백설탕, 정제수, 비타민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등으로 구성된 엑상차로 일정량을 물에 섞어 마시는 제품

구분	HS CODE	호의 용어
우리나라	2008.30	감귤류 과실의 조제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된 것
중국, 미국	2106.9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우리나라는 유자차를 HS 2008.30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보아 HS 2106.90호에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2008호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008호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하거나 건조 등의 단순한 가공방법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로 분류된다. 특히, 해설서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
-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살구·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 공하는 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예: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2008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 있고 그밖의 물질(예: 전분)도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한다.

액상으로 된 유자차의 경우 유자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원형의 과실을 분쇄하여 물과 설탕시럽 등을 가한 것으로 직접 음료로 섭취할 수 없으므로 제2008호 해설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008호에 포함되며, 특히 감귤류의 과실이 분류되는 2008.30호에 분류한다.

제2106호의 해설서의 제외 규정에 따르면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 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 2008호에 분류하도록 하여, 해설서의 내용에 충실할 경우 우리나라의 품목분류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미국의 품목분류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제2106호의 해설에서는 다른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음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은 이에 따라 유자차를 우리나라와 달리 2106.90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분류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으로 유자액상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HS CODE인 '2106.90'으로 분류하여, '2106.90'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유자액상차 2008.30

유자당절임, 백설탕, 정제수, 비타민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등으로 구성된 액상차로 일정량을 물에 섞어 마시는 제품

제2008호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일·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008호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 등의 단순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일·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특히, 해설서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일(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
-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살구·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 공하는 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긴 과일·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예: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2008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 있고 그밖의 물질(예: 전분)도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한다.

액상으로 된 유자차의 경우 유자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원형의 과실을 분쇄하여 물과 설탕시럽 등을 가한 것으로 직접음료로 섭취할 수 없으므로 제2008호 해설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008호에 포함되며, 특히 감귤류의 과실이 분류되는 2008.30호에 분류한다.

3) 유자액상차의 원재료별 분류

① 당침유자 2008.30

유자와 설탕을 절인 것으로, 유자 50% 설탕 50% 함유

제2008호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관세율표 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본 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유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30.1000호에 분류해야 한다.

② 액상과당 1702.60

전분을 전분 분해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이성질화효소를 사용하여 과당으로 이성질화한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액

제1702호

그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관세율표 1702호 해설서에 따르면 설탕의 수용액으로 구성된 사탕무당 및 사탕수수당의 당시럽은 향미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1702호에 분류되며, 향미나 착색제가 첨가되면 2106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액상과당은 과당시럽이 분류되어 있는 1702.60.2000호에 분류된다.

③ 정백당 1701.99

설탕 제조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작은 입자의 순도 높은 흰색의 설탕

제1701호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은 갈색 결정체 또는 다른 고체 형태인데, 갈색물은 분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제당은 조당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이다. 정제당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1701.99.0000호에 분류된다.

④ 구연산(시트르산) 2918.14, 구연산나트륨 2918.15

하이드록시기를 가지는 다염기(多鹽基) 카복실산의 하나로 많은 식물의 씨나 과즙 속에 유리 상태의 산으로 함유. 식품에 첨가하거나 분석시약 또는 혈액응고저지제로 사용함

제2918호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산화유도체

시트르산이라고도 불리는 구연산은 2918.14.0000호에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류한다. 구연산나트륨은 기타의 시트르산의 염이 분류되는 2918.15.1090호에 해당된다.

⑤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2936.27**

제2936호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비타민은 2936.27.1000호에 아스코르브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분류한다.

⑥ **정제수 2201.90**

수도를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여과, 살균, 정제 또는 연수 처리한 천연수

제2201호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은 2853.00.100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여과, 살균, 정제 또는 연수처리한 천연수는 제2201호에 분류한다. 의약용을 위하여 일정 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용으로 한 것은 300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은 2201.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유자차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유리병(7010.90), 금속제 마개(8309.90), 종이라벨(4821.10), 폴리에틸렌제 열수축필름(3920.62), 종이상자(4819.20) 등이 소매용 유자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들이다.

유자 관련 음료의 품목분류

① 주스 2009.31/2009.39

유자농축액 95%

제2009호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2009호에는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어진 과실주스와 채소주스가 분류된다. 주스는 농축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이와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 또는 냉각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

특히,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주스와 농축하지 않은 주스를 구분하는데 브릭스값 20을 기준으로 하며, 유자주스는 다음과 같다.

유자로 된 주스로 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2009.31호에, 브릭스값이 20 이하인 것은 2009.39호에 분류한다.

브릭스값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도나 섭씨 20도가 아니라면 섭씨 20도로 보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 주스 분류 시 주의할 점

주스와 음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연주스 또는 정상의 과실/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는 경우 이를 음료로 본다.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 이상의 물이나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 등은 제2202호에 분류되므로 주스와 음료 구분을 명확히 하여 품목분류 오류를 예방해야 한다.

② 유자음료 2202.90

유자과즙 1%, 벌꿀 0.1%를 함유한 음료

제2202호

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제2202호에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기타 감미제 또는 향미제가 들어 있는 물, 광수 및 탄산수와 같이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 알코올 음료가 분류된다. 보통 농축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음료로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물을 첨가한 것은 주스가 아닌 음료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특히, 이 호의 해설서에는 과실음료에 대해 레모네이드, 오렌지수, 콜라 등과 같은 음료로 보통 음료에 과실주스, 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2202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로 분류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자즙, 물, 당류, 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유자음료는 기타 과실주스 음료로 보아 제2202.90호에 분류한다.

※ 음료 분류 시 주의할 점

탄산을 함유한 음료는 분류에 문제가 없으나, 알코올을 함유하는 경우 품목분류가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와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구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므로 알코올 함유량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품목분류에 있어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란, 전 용량에서 알코올의 용량이 100분의 0.5 이하인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음료는 주류 제조 방법에 따라 2206호, 2208호 등에 분류하며 2202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③ 유자즙 2202.90

유자당절임 40%, 정제수 60%로 구성된 음료

제2202호

설탕이나 그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유자즙 또한 유자농축액, 물, 당류 등으로 구성된 음료로 보아 위에서 설명한 유자차와 동일하게 HS CODE를 분류한다.

④ 유자소주 2208.90

유자과즙에 소주를 희석하여 만든 주류

제2208호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 리큐르(liqueurs)와 그밖의 주정음료

과실주스나 물, 설탕, 착색제 향미료나 그밖의 성분을 증류주에 혼합하여 포도주와 유사하게 만든 음료도 2008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유자즙과 소주를 희석하여 만든 유자소주는 소주가 분류되는 2008.90에 분류한다.

◆ 유자소주의 품목분류 시 유의사항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는 알코올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는 2002호에 분류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알코올음료는 각 국가마다 법령이 있어 알코올 용량이나 제조방법과 첨가물질에 대한 규율이 서로 달라 관세율표와 분류기준이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주세법에서는 알코올의 용량이 1도 이상인 경우 주류로 취급한다.

3. 양허대상 여부 및 세율 확인 (STEP 3)

가. 개요

먼저 활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에서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혹은 얼마만큼 관세가 경감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 또는 인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자차에 대한 FTA 협정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 및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등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세율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각 협정마다 품목별로 즉시철폐와 단계적철폐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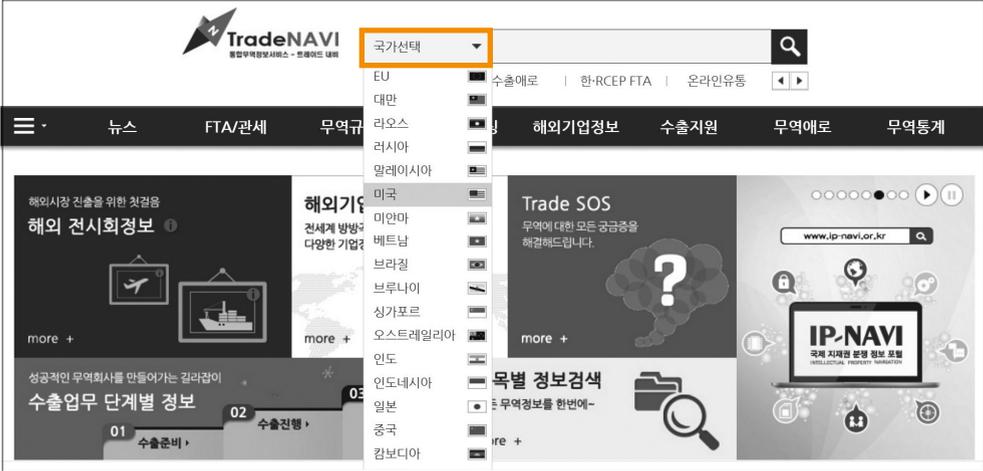
나. 확인 방법

1)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활용

①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접속(<http://tradenavi.or.kr>)



② ‘국가 선택’에서 수출 상대국 선택



③ 검색창에 ‘HS CODE(6단위)’ 또는 ‘품목명’으로 검색



④ 해당 HS CODE 선택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통합관세 검색

국가선택 200830

TPP | 수출애로 | 한-RCEP FTA | 온라인유통

뉴스 FTA/관세 무역규제 해외마케팅 해외기업정보 수출지원 무역애로 무역통계

통합검색

검색어 : 20083085 16건

필터 국가선택 HS코드 확인

세출/원산지 (16건)

FTA 정보 (0건)

무역규제 (40건)

미국 HS코드 : 20083085 해당년도 : 2015 기본세율 : 14% 협정세율 : 10%

품명 : Citron

원산지결정기준(PSR)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최근 검색어

- 200830
- 20083085
- 220600
- 22060045
- 20059997
- 84828000
- 94051080
- 210690
- 2106090
- 226000

⑤ FTA 협정세율 확인

FTA/관세

품목별 정보검색

대상국 미국 HS코드 20083085 HSK속건표보기

HS Code : 20083085 코드지정

Code	Product Description
2008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spiri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00830	- Citrus fruit: -- Other:
20083085	--- Citron

관세 내국세 (0) TRT정보문 (28) 환경규제 (0) 인증 (4) 수입조건 (8) 통관거부사례 (12,221)

기본관세율 (MFN rate) TIP

기본세율 14%

보조단위 kg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TIP

FTA 협정 세율 6% 연도별세율표 티협정세율단 (미국이 체결한 타협정 세율 조희)

발효일자 2012.03.15

수출시 체크사항

- 미국 세율 TIP
- 미국 사전확인 및 준수사항
- 미국 수입 통관결차

2) 관세청 홈페이지 활용

관세청 FTA 포털(<http://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

다. 유자차(2008.30)의 수출세율 확인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에서 검색하거나 각 협정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양허대상 여부 및 협정별 세율 확인

협정 / 세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2015	2016	2017
칠레		6	0	0	0
싱가포르		0	0	0	0
EFTA		0	0	0	0
A S E A N	인도네시아	5	0	0	0
	캄보디아	35	5	5	5
	베트남	40	10	0	0
	미얀마	15	5	5	5
	태국	30	0	0	0
	라오스	30	30	30	30
	필리핀	10	0	0	0
	브루나이	0	0	0	0
	싱가포르	0	0	0	0
	말레이시아	0	0	0	0
인도		30	30	30	30
EU		17,6	0	0	0
페루		9	0	0	0
미국		2,9¢/kg	0	0	0
터키		58,5	58,5	58,5	58,5
호주		0	0	0	0
캐나다		0	0	0	0
중국		35	미발효	미발효	미발효

* 해당 수출 양허세율은 참조의 목적이며, 정확한 세율은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STEP 4)

가. 개요

해당 제품의 HS CODE, 양허여부 및 세율을 확인하였다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또는 동일한 협정 내에서도 품목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 원산지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충분가공원칙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각 FTA 협정은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불인정 공정’ 또는 ‘불충분 공정’이라고 한다.



[불인정 공정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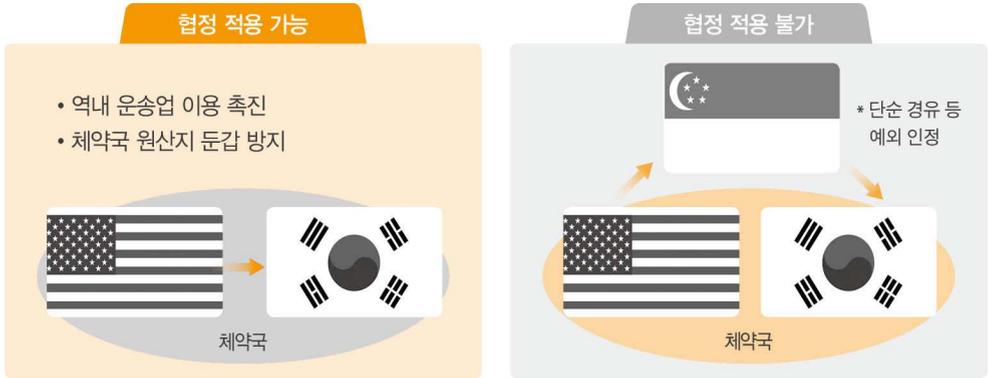
대상 FTA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 캐나다, 호주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이 운송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존 작업 • 포장의 변경, 그리고 포장 상태의 해체 및 조립 • 먼지·산화물·기름·페인트 또는 그밖의 막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 •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매칭 • 단순 결합공정·라벨링·프레스·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등 • 멀치 → 마른멀치, 쌀 → 쌀가루, 안경테 / 안경렌즈 → 안경 등

나) 직접운송원칙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예외)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



①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

세관은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② 수출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 입증 못하는 경우 원산지 불인정

-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적출항이 체약국 항구, 도착항이 우리나라 항구이어야 함)
- 제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되었을 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 제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품목별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을 당해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다만, 완전생산기준을 이론적으로만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의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세번이라 함은 일정 기준에 따라 물품을 분류한 HS CODE를 말한다. 세번이 변경되었다는 말은 원재료의 HS CODE가 제조를 거쳐 완제품의 HS CODE로 변경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다르면 ‘변경되었다’라고 말한다.

세번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재료에서 제품으로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형태, 성분, 성질, 용도 등)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이다.

2008.30

2단위 류 변경

2008.30

4단위 호 변경

2008.30

6단위 소호 변경

- HS 2단위 변경기준(“CC” Rule) – 다른 2단위, 류(Chapter)에서 해당 류(Chapter)로의 변경
- HS 4단위 변경기준(“CTH” Rule) – 다른 4단위, 호(Heading)에서 해당 호(Heading)로의 변경
- HS 6단위 변경기준(“CTSH” Rule) – 다른 6단위, 소호(Sub-Heading)에서 해당 소호(Sub-Heading)로의 변경

[2단위 세번변경 예시]

관세표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과 식용성육	어패류	낙농품 · 조반 · 천연물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 · 꽃	채소	과실 · 과실과류	커피 · 차 · 향신료	
10	곡물	곡물의 분과 조분말가루 잔분	채유용 종자 인삼	식물성 알 · 스킨	기타 식물성 생산품	농산물생 유지	육 · 어류 · 조제품	당류 · 설탕과자	코코아 · 초코렛	곡물 · 곡분 · 의 주제품과 빵류	
20	채소 · 과실 · 조제품	기타의 조제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소	조제사료	담배	토석류 · 소금	광, 음력, 회	광물성 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30	의약품	비료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향료 화장품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화학류, 성냥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과 그제품	
40	고무와 그제품	원피 가죽	가죽제품	모피, 모피제품	목재, 목탄	교크, 교, 갈	조물재료의 제품	플프	지와 판지	서적 · 신문 인쇄물	
50	견 · 견사 · 견직물	양모 · 수모	면 · 면사 · 면직물	마류의사와 직물	인조 섬유제 · 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	워딩 부직품	양탄자	특수 직물	침투 도포한 직물	
60	편물 (인류 (편물제))	인류 (편물제 이외)	인류 섬유제품, 나뭇	기타 섬유제품, 나뭇	신발류	모자류	우산, 지팡이	조제 우모 인조제품	석 · 시멘트 석면제품	도자 제품 직물	
70	유리	귀석, 반귀석, 귀금속	활강	활강제품	동과 그제품	니켈과 그제품	알루미늄과 그제품 (유부)	연과 그제품	아연과 그제품		
80	주석과 그제품	기타의 비금속	비금속 제광구, 스펀 · 포크	각종 비금속 제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TV · 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학/의료 측정 · 검사 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류 조명기구	안구 운동용구	잡품	예술품 공예품			

예를 들어 유자를 가공하여 유자차를 만든 경우, 위의 속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8류에서 20류로 HS CODE 2단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자차의 세번 변경]



다)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계산방식은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LC(Local Contents)법과 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MC(import Contents)법이 있다. MC법은 비원산지 재료비를 분자값으로 삼아 산출하는 단일 방식이며, LC법은 다시 집적법, 공제법 및 순원가법으로 구분된다.

① 역내부가가치비율(RVC법)



■ 직접법(BU: Build-Up)

원산지 재료비 비율 직접 확인

$$BU = \frac{\text{비원산지 재료비}}{\text{상품가격 (FOB)}}$$

■ 공제법(BD: Build-Down)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원산지 재료비 비율을 간접 확인

$$BD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 재료비}}{\text{상품가격 (FOB)}}$$

② 역외부가가치비율(MC법)



$$MC = \frac{\text{비원산지 재료비}}{\text{상품가격 (EXW)}}$$

라) 결합기준

품목별 기준은 상기 설명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도와의 협정과 같은 경우 주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CISH+BD35%로 규정되어 있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역내산 원산지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다.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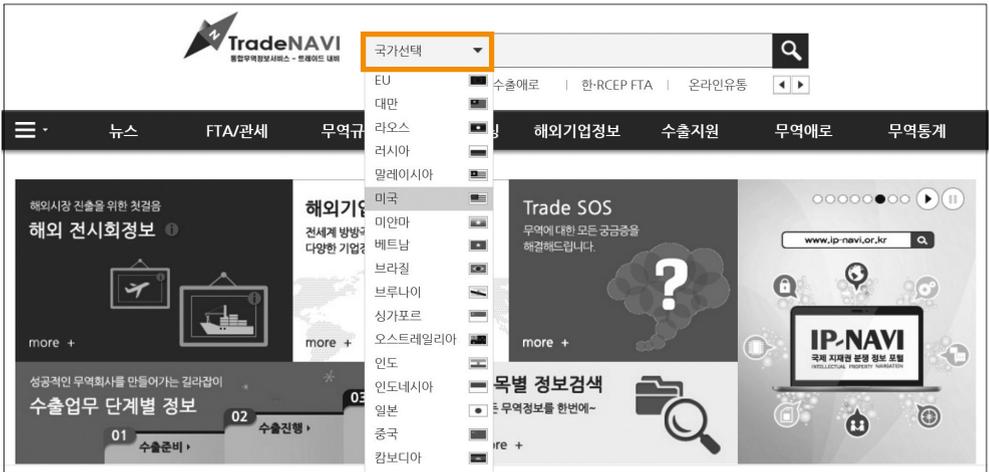
관세청 또는 무역협회와 같은 관련기관에서 구축해 놓은 사이트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활용(<http://tradenavi.or.kr>)

①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접속



② '국가 선택'에서 수출 상대국 선택



③ 검색창에 'HS CODE(6단위)'입력 후 검색



④ 해당 HS CODE 선택



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관세

품목별 정보검색

대상국: 미국 | HS코드: 20083085 | HSK속권표보기

HS Code : 20083085 코드재정

Code	Product Description
2008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spiri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00830	- Citrus fruit: -- Other:
20083085	--- Citron

관세 | 내국세 (0) | TBT동보문 (28) | 환경규제 (0) | 인증 (4) | 수입요건 (8) | 통관거부사례 (12,221)

기본관세율 (MFN rate) TIP

기본세율: 14%
보조단위: kg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TIP

FTA 협정 세율: 6% 연도명세율 | 타협정세율 (미국이 체결한 타협정 세율 조회)
발효일자: 2012.03.15

원산지기준(PSR)

HS Code (2015 기준)	PSR설명	결정기준
2008308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세번변경기준

수출시 체크사항

- 미국 세율 TIP
- 미국 사정확인 및 준수사항
- 미국 수입 통관절차
- 한미 FTA 확인사항

2) 관세청 홈페이지 활용

①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

라. 유자엑상차의 원산지결정기준

■ HS 2008.30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BD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BD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CTH+MC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D
EU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CC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BD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CC
터키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WO
호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베트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이 호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 포함 비율이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CTH or BD

■ HS 2106.90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중국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IV

Chapter

FTA
활용하기



IV. FTA 활용하기



1.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STEP 5)

가.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이하 “BOM”)란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명세를 나타낸 것으로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와 이들 HS CODE, 소요량, 단가, 원산지 등을 표시한 목록이다. FTA 원산지 판정은 BOM상의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BOM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기본사항

- 수출물품에 대한 제품명, 모델명, 규격/단위, HS CODE 등을 Invoice나 원산지증명서(확인서)에 기재될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한다.(예: 한-ASEAN FTA, CTH)
- 품명은 회사에서 완제품, 원재료, 부품 등을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다. BOM상의 제품, 원재료 품명은 실제 거래되는 품명으로 기재한다.

- 다만, 자사에서 관리하는 품명과 공급처 또는 고객사에서 관리하는 품명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조건표를 작성하거나 BOM에 모두 기재해줌으로써 매칭시켜 주는 것이 좋다.

[소요자재명세서(BOM) 작성 예시]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완제품 품명 : 유자차 (HS 2008.30)
 규격 / 품번 : 1kg
 적용협정명 : 한-미 FTA
 원재료 사용내역

① 품명	② 세번부호 (HS No)	③ 원산지	④ 소요량	⑤ 단위	⑥ 단가	⑦ 가격(원)	⑧ 매입처	⑨ 인증서류	⑩ 연락처	
당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가나다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02-6201-1111	
볼풀	40900	미상	0.03	kg	5,000	150	라마반	세금계산서	02-6220-1959	
역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사아자	세금계산서	02-2466-1960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차카탄	세금계산서	02-832-1961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파항하	세금계산서	02-6201-5521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ABC	세금계산서	031-231-3475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DEF	세금계산서	064-234-6234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GHI	지료영수증	055-523-7456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JKLM	거위명세서	033-723-8453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NOP	세금계산서	02-6201-6234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QRS	거위명세서	042-877-2346	
합 계	원산지재료 (역내산)						1456			
	비원산지재료 (역외산)						902.1			
	합 계						2358.1			

작성자 : 홍일봉
 직위 : 대리
 상호및주소 : ㈜홍일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
 작성일자 : 2015-06-30

2) 원재료 관련 사항

가) BOM 구성원칙

- 원재료는 완제품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직접 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매입(구매·수입)하는 모든 원재료를 나열하여야 한다.
- 사급 원재료의 경우 최종 구매단위 원재료를 기준으로 BOM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상사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주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 단위를 BOM에 구성하고, 유상사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주가공업체에서 가공 후 공급받는 반제품을 BOM에 구성한다.

나) 소요량, 단가 및 가격정보 기재

- 소요량은 물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원재료의 총량으로 소요량 단위는 eg, kg, m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실제 쓰이는 단위에 따라 기재하도록 한다. 원재료 배합 비율로 관리하는 경우, 소요량 대신 구성 비율(%)로 처리하여도 된다. 이때 단가는 완제품 무게에 따라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3) HS CODE

- 완제품과 BOM상의 각 원재료의 HS CODE를 6단위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판단을 하거나 원산지확인서·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원재료에 대하여 협정별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기재사항이다.

4) 원산지 / 원산지 증빙서류

- 역내산 지위를 획득한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원재료에 한해 BOM상 원산지를 'KR' 또는 '역내산'으로 기재하고, 직접 수입한 원재료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이라고 기재하고 BOM상 원산지 기재란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산지국 정보를 인용하여 표시한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원재료는 모두 '미상(Unknown)'으로 기재한다.
- 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에 '원산지확인서'를 기재한다.
-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역내산을 증빙하는 서류이지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는 아니다. 즉, BOM에 입증서류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기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구매 입증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 특이하게 일반적인 품목과는 달리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 입증서류로 수매확인서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재료 원산지 / 구매증빙서류'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구매처 정보

- 구매처 정보에는 해당 원재료를 매입한 회사명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사후검증 시 실제 해당 업체에서 구매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6) 거래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은 BOM에 기재된 원재료가 실제 생산에 투입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로써 FTA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이다. 거래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어떠한 형태의 자료든 관계없이 완제품 제조를 위해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된다. 해당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기재한다.

※ 누적기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부족하며, 협정 상대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제조공정도

- 제조공정도란 제품의 제조·생산 과정을 도식화하여 표현한 문서로 FTA 활용에 있어서는 역내에서 물품이 실제로 생산되었는지, 협정국 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BOM상의 원재료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FTA용 제조공정도는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주요 공정을 기준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공정과 어떠한 원재료가 투입되는지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사내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제조공정도는 순서도 형태로 주요 공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제조공정도 - 공정설명 형태]



위의 일반적인 제조공정도를 FTA 활용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FTA 제조공정도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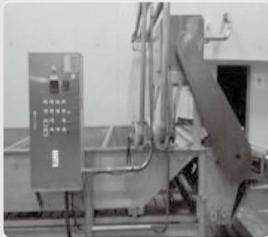


1) 사진과 세부 설명: 각 공정별 수행사진과 공정에 대한 설명 기재

공정사진이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완성된 물품이 국내에서 어떤 제조과정을 거치는지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실제 공정사진을 넣는 것이 좋다. 이는 역내에서 실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직접 제조·가공함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 투입 원재료: 각 공정별 투입 원재료 기재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BOM의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한다. 다만, 여러 물품을 동일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원재료를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기재 하여도 무방하다.

공정명	4) 병입	5) 병입 후 살균	6) 포장 및 최종검사
사진			
세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에 넣고 마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분간 병입 후 살균 (외주가공)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수축필름 가공, 라벨부착, 벤딩, 박스포장
투입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병, 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입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라벨, 열수축필름, 카톤박스
사용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matic filling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기계 ④

3) 외주가공에 대한 표시(있는 경우)

일부 공정이 외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임가공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작업지시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을 외주가공의 증빙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4) 사용설비: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 명칭(모델명) 기재

유자차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기, 살균기, 배합기 등 공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관련 설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기재하면 해당 공정이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다. 원재료 원산지 / 구매 증빙서류

BOM을 구성하는 각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류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해 해당 서류에 표시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는 미상(Unknown)으로 처리한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시 원산지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된다.

또한 구매 증빙서류는 원재료 거래 시 공급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말하며, 실제로 BOM상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여권(passport)’이라고 가정하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국제거래에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주는 증명서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재료 또는 제품이 국내거래 될 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물품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확인서를 무조건 발급해서는 안 되며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결과 역내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발급번호(Reference No.) : _____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일괄)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1. 공급하는 자(Suppli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No.)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2. 공급받는 자(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No.)
전자우편주소(E-mail)	

■ 발급번호: 원산지확인서 작성 업체의 자체적 발급번호 기재(예: 2015-01)

■ 공급하는 자: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팩스, 주소, E-mail, 인증수출자인증번호(공급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만 가입)

■ 공급받는 자: 공급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팩스, 주소, E-mail 기입

공급물품명세서 (Good Statements)									
3. 연번(S/N)	4. 적용대상협정(Applicable FTA)	5. 품목번호(HS 6단위)(HS Code (6-digit))	6. 품명·규격(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7. 원산지결정기준(Origin Criterion)	8.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9. 원산지(Country of Origin)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Blanket period)(YYYY/MM/DD ~ YYYY/MM/DD)		
					충족(Y)	미충족(N)	[]	[]	
					[]	[]	[]	[]	

■ 연번: 물품 종류별로 번호를 부여
■ 적용대상 협정: 해당 FTA 협정 기재(예: 한-EU, 한-아세안 등)

■ 품목번호: 공급물품 HS 6단위 기재

■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공급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약어 기재)
- 완전생산기준: WO
- 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
- 부가가치기준: BD%, BU%, MC%, NC%
- 결합기준: CTH(또는 CC, CTSH) + BD%(또는 BU%, NC%, MC%)
- 주요 공정기준: SP
- 역외가공 생산물품: OP
- 기타 기준: Other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기준 충족한 경우 [V] '충족' 표시

■ 원산지: 기준 충족한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표기

■ 원산지포괄기간: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기간 명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작성 자(Declarer): _____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Position): _____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_____
작성 일자(Date): _____

명판 직인

원산지확인서의 전략적 확보 방법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작성하거나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략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①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는 경우(4단위 변경기준 예시)

완제품의 HS CODE 앞 4자리와 동일한 비역내산 원재료가 사용되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 되는 경우, 그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 원재료로 원산지의 지위를 바꾸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원산지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밖에도 원재료가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을 갖도록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두면 품목분류에 경합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제품의 원산지가 변동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모든 부가가치비율 계산식은 원산지재료비가 높을수록 원산지를 충족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료비의 비중이 큰 원재료를 중심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면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다.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가치(가격)가 높은 원재료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되, 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수치보다 1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공제법 40%가 기준인 경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이 50% 이상이 나오도록 부가가치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다.

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주기 위한 것이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다.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특정 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된다.

4) 농수산 가공식품의 원산지 입증서류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일반품목과 같이 기본적으로 상기의 원산지확인서 등이 원산지 입증서류로 사용된다.

다만,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 한-터키 등 특정 협정에서는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특히, 채소류)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WO)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공급자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입증서류는 업체의 자율양식에 의해 작성된 서류가 아닌 기관에서 발급하였거나 협정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된 서류여야 한다. 농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로는 수매확인서 등의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다. 다만, 물품별 거래구조와 유통단계에 따라 입증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인삼과 같은 특수작물의 경우 수삼연근확인서와 같은 기관에서 확인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제8류 과실류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예시]

품목	필수 여부	서류 구분		선택	발급기관	발급대상기간
		생산자	유통업자 / 수출자			
8류 (과실류)	필수	농지원부	농지원부	택1	지방자치단체	-
		조합원 명부	조합원 명부		농협	-
		지역생산자 명부	지역생산자 명부		농협	-
		출하확인서	출하확인서	택1	인수자	건별
		수매확인서	수매확인서		농협	건별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자	건별
		직불금내역서	직불금내역서		농협	건별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공급자	건별		
	선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선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선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선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필수	-	원산지(포괄)확인서	-	공급자	건별 / 기간별

5) 기타 서류

원산지 입증서류로 원산지 판정 내역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 확인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 확인서에 서명할 수 있는 서명권자가 서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명카드가 있다.

① 원산지증명서/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예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가. 자율증명하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 규격	품목번호 (6단위)	수량	금액	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비고
1	2014. 06.01	010-15-XXXX XXXX / 2014.06.01	Cosmetic	304.99	100 EA	1,000	KR	FTA화장품	FTA Trade / 미국	한-미 / CTH	신규

※ 비고란은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여부 등을 기재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예시]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발급번호 및 공급일자	품명, 규격	품목번호 (6단위)	수량	금액	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공급처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비고
1	2014. 06.01	2014-0001 / 2014.06.01	Cosmetic	304.99	100 EA	1,000	KR	FTA화장품	FTA무역	한-아세안 / CTH	신규

※ 비고란은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여부 등을 기재

②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예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1		영업	과장	서원산	2013.01.01 - 신규	2014.05.31 - 퇴사
2		영업	사원	안관리	2013.06.01 - 신규	

라. 원산지소명서

1) 개요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 판정의 근거가 되는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원산지인정 요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에 따른 필수서류로 활용된다.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며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이 정해져 있다.

2) 작성 방법

[원산지서명서 서식]

원산지서명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4.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금액				
7.주요생산공정					
원 재료 명 세 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수 량 가 격	(생산자)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2.직접운송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4.원산지 결정	충족 ()		불 충족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 수출자: 실제 수출자를 기입
- 생산자: 수출국에 실제로 물품을 생산한자를 기입(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 기입)
- 품명 / 규격: 송품장(Invoice)과 동일하게 기입
- HS No: HS 6단위 입력
- 물품가격: FTA의 조건에 따라 [V] 표시, 송품장의 가격, 통화단위 일치
- 원산지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기입
- 주요생산공정: 직조, 날염 등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 기입
- 연번: 원재료의 일련번호
- 재료명: 원재료의 품명
- HS No: 원재료의 HS 6단위
- 원산지: 원산지의 생산국명
- 가격: 원재료의 수량 및 가격 (세번변경기준 적용 물품의 경우 함유 % 비율 또는 생략 가능)
- 공급자: 원재료 공급자(생산자)
- 원산지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된 기준 충족 여부 기입(완전, 세번변경, 부가가치, 동시충족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나머지는 '아니오'를 기입)
- 작성자 등 : 작성자의 서명 또는 명판 직인, 작성 일자 기재

* 투입 원재료의 수가 많아 원재료 명세서란이 부족할 경우 원재료 명세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예: 최소기준 적용 여부를 예로 확인한 경우 수출물품의 원재료별 원가내역서 및 원재료별 HS CODE가 기입된 BOM자료, 원재료 구매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첨부)

2. 원산지 판정 (STEP 6)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은 FTA 활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여러 재질에 따라 구성하는 원재료 및 생산 방법은 조금씩 달라 원재료 및 원재료의 HS CODE는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판정 방법은 유사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유자차의 BOM을 바탕으로 협정별 원산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제품정보



- **품목명**
 - 유자액상차
- **HS Code**
 - 2008.30(2106.90)
- **설명**
 - 얇게 자른 유자를 꿀이나 설탕과 섞은 뒤 3~4개월 보관하여 유자찌꺼기를 걸러낸 유자청을 유리병에 담아 찬물 또는 뜨거운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

■ Bill of Material(소요자재부품명세서)

- 품명: 유자차(HS 2008.30)
- 규격: 1kg
- 적용협정명: 한-미FTA
- 원재료 사용내역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인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료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FOB가격: 6,500	

나. 유자엑상차의 원산지결정기준

■ HS 2008.30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판정 결과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BD 45	역내산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BD 45	역내산
E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CTH and MC 55	역내산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D 40	역내산
EU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CC	역내산
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BD 40	역내산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CC	역내산
터키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WO	역내산
호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역내산
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역내산
베트남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이 호의 물품으로 변경 된 것, 또는 역내가치 포함 비율이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CTH or BD 40	역내산

■ HS 2106.90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방법	판정 결과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역내산
중국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역내산

* and: 동시 충족 기준

(예시) CTH and BD45%: CTH와 BD45%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역내산 인정

* or: 선택 충족 기준

(예시) CTH or BD45%: CTH와 BD45% 기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역내산 인정

다. 원산지 판정 Simulation

* RVC(역내부가가치비율)방식의 경우 BD법(공제법)을 기준으로 판정함

1)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인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FOB가격: 6,500	

① BOM 분석

2단위 HS CODE 변경 대상 원재료: 2~11번

(1번은 원산지 인정서류 구비하였으므로 세번변경 필요 없음)

② 판정 결과

2~11번 원재료가 완제품 HS CODE와 비교하여, 모두 2단위 HS CODE가 변경되었으므로 역내산 충족함

만일 당침유자의 원산지가 KR이 아닌, '미상'이라면 당침유자 또한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완제품 HS CODE와 6단위까지 일치하므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침유자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원산지의 지위를 한국산으로 바꾸면 세번변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4단위 세번변경기준(C세번)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인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FOB가격: 6,500	

① BOM 분석

4단위 HS CODE 변경 대상 원재료: 2~11번

(1번은 원산지 인정서류를 구비하였으므로 세번변경 필요 없음)

② 판정 결과

2~11번 원재료가 완제품 HS CODE와 비교하여, 모두 4단위 HS CODE가 변경되었으므로 역내산 충족함

3) 역내 부가가치기준(BD) 산정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인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료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FOB가격: 6,500	

① BOM 분석

역내산 원재료: 1번(원산지 인정서류 수취함)

역외산 원재료: 2~11번(원산지 인정서류 수취 안 함)

② 비율 산정

$$\begin{aligned}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 \frac{\text{FOB가격} - \text{비원산지 재료비의 합계}}{\text{FOB가격}} \times 100 \\ &= \frac{6,500 - 902}{6,500} \times 100 = 86.12\% \end{aligned}$$

③ 판정 결과

- BD 40 / BD 45

위에서 산정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6.12%이므로 부가가치기준(아세안, 인도, 베트남 BD 40%, 칠레, 싱가포르 BD 45%) 이상이므로 모두 역내산 충족함

4) 역외 부가가치기준(MC) 산정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 (원)	공급자	인증서류
1.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FOB가격: 6,500	

① BOM 분석

역내산 원재료: 1번(원산지 인정서류 수취함)

역외산 원재료: 2~11번(원산지 인정서류 수취 안함)

② 비율 산정

$$\begin{aligned} \text{수입산함량비율}(MC\text{법}) &= \frac{\text{비원산지 재료비의 합계}}{\text{EXW가격}} \times 100 \\ &= \frac{902}{6,000} \times 100 = 15.04\% \end{aligned}$$

* MC법에서는 판매가격이 EXW가격

③ 17류 비율 산정

$$\begin{aligned} \text{수입산함량비율}(MC\text{법}) &= \frac{\text{17류의 비원산지 재료비의 합계}}{\text{EXW가격}} \times 100 \\ &= \frac{160}{6,000} \times 100 = 2.67\% \end{aligned}$$

④ 판정 결과

- MC 55

②에서 산정한 수입산 함량 비율이 15.04%로 부가가치기준(EFTA MC 55%) 이하이므로 역내산으로 판정함

- 17류 MC 30

③에서 산정한 17류 MC 비율이 2.67%로 기준(EU, 터키 17류 MC 30) 이하이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함

일부 협정에서는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완제품의 공장도가격 대비 30%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OM상 원재료 중 원산지가 'KR' 또는 '역내산'이 아닌 것으로 제17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액상과당이다. 액상과당의 가격은 160원으로 공장도가격에서 액상과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면 2.67%로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인 30%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역내산을 충족한다.

5) 완전생산기준(WO) 판정

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원)	공급자	입증서류
1. 당침유자	200830	KR	0.56	kg	2,600	1,456	A	원산지확인서 세금계산서
2. 벌꿀	040900	미상	0.03	kg	5,000	150	B	세금계산서
3. 액상과당	170260	미상	0.25	kg	640	160	C	세금계산서
4. 구연산	291814	미상	0.006	kg	1,400	8	D	세금계산서
5. 구연산나트륨	291815	미상	0.004	kg	1,500	6	E	세금계산서
6. 카라기난	130239	미상	0.003	kg	14,000	42	F	세금계산서
7. 비타민C	293627	미상	0.001	kg	5,200	5	G	세금계산서
8. 정제수	220190	미상	0.1	ton	205	21	H	지로영수증
9. 유리병	701090	미상	1	EA	400	400	I	거래명세서
10. 캡	830990	미상	1	EA	90	90	J	세금계산서
11. 종이라벨	482110	미상	1	EA	20	20	K	거래명세서
Total	역내산 재료(역내산)					1,456	EXW가격: 6,000 FOB가격: 6,500	
	비역내산 재료(역외산)					902		

① BOM 분석

완전생산기준 충족 필요 원재료: 없음

(유자차(HS2106.90)의 경우 특정 협정에서 채소, 과실류 원재료(7류, 8류)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요구함)

② 판정 결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원재료 자체가 없으므로 완전생산기준 충족함

6) 액상유자차의 판정 결과 분석

■ HS2008.30

협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역내산 충족 여부
칠레	CTH and BD 45	○	○	해당 없음	충족
싱가포르	CTH and BD 45	○	○	해당 없음	충족
EFTA	CTH and MC 55	○	○	해당 없음	충족
아세안	CTH or BD 40	○	○	해당 없음	충족
EU	CC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인도	CTH and BD 40	○	○	해당 없음	충족
페루	CC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터키	WO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충족
호주	CTH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캐나다	CTH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베트남	CTH or BD 40	○	○	해당 없음	충족

■ HS2106.90

협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역내산 충족 여부
미국	CC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중국	CTH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족

3.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STEP 7)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서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발급주체, 서식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발급방식은 크게 발급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발급신청을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을 받는 기관발급으로 구분된다.

가. 기관발급

1) 개요

기관발급이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중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FTA 협정세율의 적용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가) 발급 절차

세관의 경우 Uni-Pass시스템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 세관 발급



번호	흐름도
1	UNI-PASS → 수출통관시스템 접속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선택
3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서명 등록)
4	발급신청내역 전송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승인
6	특혜원산지증명 신청 승인내역 조회
7	원산지증명서 출력(신청인)

- ①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 ② 로그인 - '수출통관'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선택



- ③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입력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기준별사실신고서 경용)

원산지증명서 | 원사실

원산지재출번호: 99999 - 10 - 000000X | 전송구분: 35 | 원본: 9-원본/35-수정/10-재발행

기본 정보

신청서류코드: A | 발급: A:발급 / B:재발급 / C:보정발급 / D:정정발급 | 신청자수: 0

신청구분: A | A:신 형 / B:선적출 발급

신청연구분: CB | GD:생산자 / EX:수출자 / CB:관세사 / ZZ:기타

FTA명: I | I:한-아세안 FTA / G:한-실 FTA / J:한-인도 CEPA

신청연상호: ENA SOFT CO.LTD | 사업자번호: 9990198765

원산지인증 수출업체: [인증번호: 123 - 12 - 123456] | 유효성 검사

※ 관세청(세관)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성 검사 배튼을 클릭해서 사용가능.

수출자 정보 | 수출자정보 불러오기

수출자: ENA SOFT CO.LTD | 사업자번호: 1130398500 | 국적: KR | 검색

전화번호: 02340487000 | 팩스번호: 02340487001 | E-Mail: redjes@red.co.kr

수출자 주소: 25TH FL, KWANGMYUNG BLDG NO.57 SIMMUNNO 1 GA JONGNO-GU SEOUL KOREA

생산자 정보 | 생산자정보 불러오기

생산자: ENA SOFT CO.LTD | 사업자번호: 1130398500 | 국적: KR | 검색

전화번호: 02340487000 | 팩스번호: 02340487001 | E-Mail: redjes@red.co.kr

생산자 주소: 25TH FL, KWANGMYUNG BLDG NO.57 SIMMUNNO 1 GA JONGNO-GU SEOUL KOREA

수입자 정보 | 수입자정보 불러오기

수입자: LUA AGRICULTURAL MF | 사업자번호: 1231212345 | 국적: AQ | 검색

수입자 주소: 29 TONG HUU DINH STREET 2ND QUARTER THAO DIENHIST 2 HO CHI MINH CITY VIETNAM

상세 정보

수출신고번호: 111 - 22 - 1122334455 | 유효성 검사 | 수리일자: 2010년 11월 23일

※ 수출신고증상의 6항목의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1. 유효성을 체크하십시오.
- 번호: 3자리 - 2자리 - 10자리 (ex: 123 - 12 - 1234567890)
- 기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사용된 수출신고번호는 재사용 불가.
- 유효성 체크 미확인시 전송 불가.
2. 수리일자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수출품 포장기호: P/NO. 1-3 MADE IN KOREA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_유자차

문송수단	<input type="text"/>	선박/항공기명	<input type="text"/>
선적항구/공항	<input type="text" value="Korea, Republic of"/>	출항일자	2010년 12월 22일
목적국	<input type="text"/>	목적국 도시명	<input type="text"/>
송품장 번호	순번 <input type="text"/> 송품장 발행일 2010년 12월 22일	송품장 발행일	관리
송장발행회사	<input type="text"/>	송장발행국가	<input type="text"/>
발행회사주소	<input type="text"/>		
원산지특례	<input type="checkbox"/> 0:해당 없음 / 1:제3국 송품장 / 2:간 시 / 3:연결 원산지증명서		
비고	※ 선결연 연락처 등 기타 특이사항을 입력하십시오.(200자 이내). ※ 신규발급 1.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번호 입력으로 대체 (정부불필요) 2. 상업송장 또는 가맹 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세관변경기준(CTH, CTC 등): 세관 변경 입증서류(예: 원재료 구입영세서, 거래영세서, 생산공정영세서, 사용자면담록, 후보착자 등) - 부가가치기준(RVC):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거래영세서, 원료구입영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 등)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포장)확인서 (원재료를 넣은 후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 - 기타 해당 품목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6. B/L사본과 사유서: B/L(선적후 신청서), 사유서(선적 30일 경과후 신청서) 7. L/C사본 등 계약서류(원산지증명서 원본 추가 발급시) ※ 재발급 1. 사유서 2. 정정사유입증자료 3. 원산지증명서원본 ※ 첨부서류가 대용량 또는 제한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기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세관발급 기관 e-mail 보기] ※ 첨부파일은 최대 10개, 용량 총합 20MB로 제한됩니다.		
첨부서류	0MB/20MB : 첨부파일 <input type="text"/> 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추가 <input type="checkbox"/>		
※ 위 내용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2일 신청자: [지침권] (인) 세관 <input type="text"/> 장 귀하 <input type="button" value="돌러오기"/> <input type="button" value="입시자랑"/> <input type="button" value="전송"/>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④ 처리 상태가 '승인통보'가 되면 출력 및 서명

수출통합 처리현황 관리자 화면

신고일자	2010년 10월 30일 ~ 2010년 11월 30일	당일	전일	1주	1개월
사업자등록번호	1001011000	신고연번호	<input type="text"/>		
제출번호	<input type="text"/>	서식구분	전체		

Page: 1/1 총건수: 7건 조회

번호	서식구분	제출번호	처리상태	처리일시	상호	신고번호
1	FTA원산지증명서	9999910555558X1	접수통보	2010/11/26 20:30	신청자 상호	999-99-10555558X1
2	FTA원산지증명서	9999910555558X	보정요구	2010/11/26 20:19	신청자 상호	999-99-10555558X
3	FTA원산지증명서	9999910555558X0	접수통보	2010/11/26 20:19	신청자 상호	999-99-10555558X0
4	FTA원산지증명서	9999910555557X	바려통보	2010/11/26 20:11	신청자 상호	999-00-10555557X

- 신청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 FTA 자료실 → E-BOOK-ZONE →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 손쉽게 따라하기' 클릭

■ 상공회의소 발급



①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 접속해서 로그인 - '신청 서식 작성' - '한-아세안FTA(또는 한-인도CEPA) 원산지증명서' 선택



② 필요한 내용 기재



- 신청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우측 하단의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FTA C/O매뉴얼'을 클릭하면 E-BOOK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나)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 예시]

구분	구비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수출신고번호 입력으로 대체 가능)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화면 입력 또는 작성한 파일 제출)	
	<table border="1"> <tr> <td>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td> <td>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 자재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 원산지확인서(원산지재료의 경우) *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 자재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 원가산출내역서 - 원산지확인서(원산지재료의 경우) </td> </tr> </table>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 자재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 원산지확인서(원산지재료의 경우) *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 자재명세서(BOM) - 제조공정도 - 원가산출내역서 - 원산지확인서(원산지재료의 경우)	
기타 제출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기타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다) 발급신청 시기 및 신청인

신청 시기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후(선적일로부터 3 또는 7근무일 이내) 한-아세안 FTA의 경우 3영업일, 한-인도 FTA의 경우 7영업일 이후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상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야 특혜 인정
신청인	생산자 또는 수출자

라) 발급심사

발급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일의 심사기간을 가지고,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기관은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마) 정정발급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탃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ASEAN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율발급

1) 개요

자율발급이란 FTA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양식 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발효된 협정 중 한-칠레 FTA, 한-E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협정이 이러한 자율발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 작성 방법 및 서식

■ 한-미 FTA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생산자'와 같은 경우 외에는 필수 기재항목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동일한 물품이 반복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발급(작성)일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 지정하여 동 기간 동안 원산지증명서 반복 사용 가능
Name (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부터) To (까지)		
3. Producer (생산자)		4. Importer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수출물품의 생산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 수입자: 수출품목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Name (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Name (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5. 원산지 증명 대상 품목 내역				
Serial No. (번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2002 No. (품목번호 HS 6단위)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특이사항)				
<p>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p> <p>-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p> <p>-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대상자 성명)		T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Telephone : (전화번호)		Fax (팩스번호)

한-미 FTA 원산지 신고 시 인보이스상 필수 기재사항[협정문 제6.15조 2항]

- ①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또는 그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한-EU FTA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COMMERCIAL INVOICE				
SELLER:		INVOICE NO AND DATE: OSA/E-CI-0209 (DATE: APR 30, 2014)		
CONSIGNEE:		L/C NUMBER:		
SHIPPING MARKS	COMMODITY /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p> <p>..... 3) (Place and date)</p> <p>.....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SIGNED BY _____</p>				

1) 인증수출자번호: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 / 6,000유로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생략 가능

2) 원산지국가: 원산지국가명 기입 (예: KR)

3) 장소 및 신고일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영문)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 한-터키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COMMERCIAL INVOICE				
SELLER:		INVOICE NO AND DATE: OSA/E-CI-0209 (DATE: APR 30, 2014)		
CONSIGNEE:		L/C NUMBER:		
SHIPPING MARKS	COMMODITY /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p> <p>..... (Place and date)</p> <p>.....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SIGNED BY _____</p>				

-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 · 스탬핑 · 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
- 원산지국가: KR, KOREA, TR, TURKEY
- 장소 및 신고일자: 장소 및 신고일자가 해당 송품장에 기입된 경우 생략
-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서명
- 가공공정기준 적용물품: 부속서 2-가 적용 물품
"Derogation-Annex II (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 전시물품: 전시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 기재

■ 한-EFTA

[한-EFTA 원산지신고서]

COMMERCIAL INVOICE				
SELLER:		INVOICE NO AND DATE: OSA/E-CI-0209 (DATE: APR 30, 2014)		
CONSIGNEE:		L/C NUMBER:		
SHIPPING MARKS	COMMODITY /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p>~~~~~</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p> <p>.....3) (Place and date)</p> <p>.....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5) (Remarks)</p> <p style="text-align: right;">SIGNED BY ___</p>				

1) 인증수출자번호: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만 기재

2) 원산지국가: ISO국가명
 - 대한민국: KR
 - 아이슬란드: IS
 - 노르웨이: NO
 - 스위스(리히텐슈타인: LI): CH

3) 장소 및 신고일자: 장소 및 신고일자가 해당 송품장에 기입된 경우 생략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원산지신고문 안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입한 경우 생략 가능

5) 특기사항: 역외가공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한-칠레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1: Exporter (Name and Address)				Issuing Number: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3: Im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 (Print or Type)				Title			
Date (MM/DD/YY)				Telephone / Fax / E-mail			

- 발급번호: C / O 일련번호(자율 부여)
- 수출자: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
 - 생산자 1명인 경우: 상호, 주소, 사업 등록번호
 - 생산자 2명 이상: "VARIOUS" 또는 모든 생산자 List 첨부
 - 생산자=수출자: "SAME"
 - 모를 경우 "UNKNOWN"
 - 비밀일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 수입자: 상호, 주소, 국가 기재
 - 모를 경우: "UNKNOWN"
 - 다수인 경우: "VARIOUS"
- Description: Invoice와 동일 기재 (Invoice No 기재 - Invoice No를 모를 경우 order no 등 기재)
- HS CODE: HS 6단위까지 기재
- Preference Criterion: A, B, C, D (*하기 특혜기준 참조)
-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 부가가치, 공제법-BD / 직접법-BU
- Country of Origin: 원산지(KR, CL)
- Remarks: Invoice가 비당사국(한국, 칠레 이외의 국가)에서 작성된 경우 작성자의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 한-캐나다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From: ____/____/____ YYYY MM DD To: ____/____/____ YYYY MM DD			
3. Producers'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4. Importer's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Value	9. 10. Country of Origin Test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Authorized signature: Name: _____ Date: ____/____/____ YYYY MM DD		Company: _____ Title: _____ Telephone: _____ Fax: _____			

- 수출자: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및 참조번호(선택 기재사항) 기재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기재
- 생산자: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및 참조번호(선택 기재사항) 기재
- 수입자: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기재
- 품명: 품명은 송품장 및 HS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내역을 포함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 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기재
- HS 품목번호: 각 물품에 대한 HS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
- 원산지결정기준: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기재
- 부가가치기준: 순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NC" 또는 거래가격이 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TV" 기재
- 원산지: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는 "KR",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는 "CA" 기재
- 서명: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 기재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 기재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2조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장, 제3.1조 나호, 부속서3-가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부속서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한-호주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1. Issuing Number:	
2.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From: (DD/MM/YYYY) To: (DD/MM/YYYY)
4. Produc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5.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6.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invoice number or 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where appropriate):	7. Harmonized System code(six digits):
8. Preference criterion:	
9. Observations (optional field):	
10. Declaratio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 of 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Signature:	Company or Authorised Body
Name:	Title:
Date:	Contact details:

- 발급번호: 증명서 고유번호를 기재
- 수출자: 상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포함)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그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 수입기간 반복 사용 가능
- 생산자: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및 E-mail 기재
- 수입자: 수출물품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 Description: Invoice와 동일 기재 (Invoice No 기재 - Invoice No를 모를 경우 order no 등 기재
- HS No: HS 6단위 기입
- 원산지결정기준: WO, PSR, PE, Other
- Observations(optional field): 물품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 기재
- 서명 등: '작성자 서명', '증명일자' 등 기재

다. 원산지포괄확인서

1) 개요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공급자(supplier)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customer)의 요청이 있을 때 당해 국내 거래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자 등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FTA에서 말하는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작성 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발급번호(Reference No) : <input type="text"/>									
본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일괄)									
1.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No.)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Quotese Authorization No.)					
2. 공급받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No.)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 (Good Statements)									
3. 연번 (S/N)	4. 적용대상협정 (Applicable FTA)	5. 품목번호 (HS Code) (6-8digit)	6. 품명·규격 (Description of Goods)	7.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8.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9.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충족 (Y) / 미충족 (N)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직 위(Position) :		명판 직인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성 일자(Date) :									

- 발급번호: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의 자체적 발급번호 기재(예: 2015-01)
- 공급하는 자: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팩스, 주소, E-mail, 인증수출자인증번호(공급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만 가입)
- 공급받는 자: 공급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팩스, 주소, E-mail 기입
- 연번: 물품종류별로 번호를 부여
- 적용대상 협정: 해당 FTA 협정 기재 (예: 한-EU, 한-아세안 등)
- 품목번호: 공급물품 HS 6단위 기재
-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공급물품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약어 기재)
 - 원전생산지준: WO
 - 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
 - 부가가치기준: BD%, BU%, MC%, NC%
 - 결합기준: CTH(또는 CC, CTSH) + BD%(또는 BU%, NC%, MC%)
 - 주요공정기준: SP
 - 역외가공 생산물품: OP
 - 기타 기준: Other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기준 충족한 경우 'Y' 충족 표시
- 원산지: 기준 충족한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표기
- 원산지포괄기간: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기간 명시



V

Chapter

FTA 사후관리하기



V. FTA 사후관리하기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통하여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및 세율을 확인하고 판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해서 모든 FTA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관리도 원산지 판정 및 발급 업무만큼 중요하다.

사후관리 업무는 크게 서류 관리와 사후검증대비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으로 원산지 서류들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이는 곧 사후검증대비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1. 서류 관리 (STEP 8)

가. 개요

아무리 협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사후검증 시 해당 판정 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에 사용된 서류들을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보관하여 언제든지 해당 판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보관서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는 FTA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서류를 법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법정기간이란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생산자의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수입자의 경우 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을 말한다.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관서류의 종류]

<p>수출자 보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② 수출신고필증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⑥ 원가계산서·원재료의 생산 및 공정명세서 ⑦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⑧ 생산자(재료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p>생산자 보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자 또는 계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⑤ 원가계산서·원재료의 생산 및 공정명세서 ⑥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⑦ 재료 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p>수입자 보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② 수입신고필증 ③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④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⑥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⑦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다. 서류관리 방법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담당자 변경·업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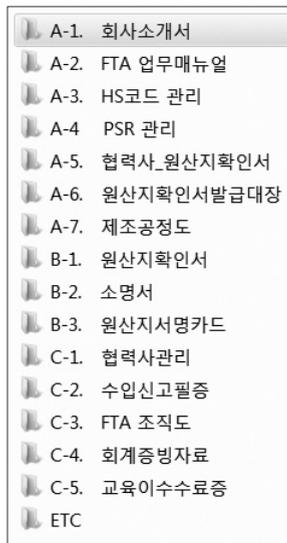
-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
- 수정 및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이력을 관리
-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분 관리
- 제품별 / 연도순 등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관리

다음은 보관방법의 예시이다. 한 가지 방법 또는 둘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또는 업체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찾도록 한다.

■ 보관방법 예시

- ①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종이서류 형태로 바인더 등을 활용해 일괄 편람하는 방법
- ②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는 USB 등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는 방법

[폴더화 관리 예시]



▶ A-1. 회사소개서
▶ A-2. FTA 업무매뉴얼
▶ A-3. HS코드 관리
▶ A-4. PSR 관리
▶ A-5. 협력사_원산지확인서
▶ A-6. 원산지확인서발급대장
▶ A-7. 제조공정도
▶ B-1. 원산지확인서
▶ B-2. 소명서
▶ B-3. 원산지서명카드
▶ C-1. 협력사관리
▶ C-2. 수입신고필증
▶ C-3. FTA 조직도
▶ C-4. 회계증빙자료
▶ C-5. 교육이수수료증
▶ ETC

③ ERP 등 전산시스템 활용(FTA Korea, FTA pass 등)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RP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무료 보급형 FTA원산지관리시스템(대표적으로 FTA Korea, FTA pass가 있음)을 활용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방법

[참고]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이드 동영상, 사용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음.

- FTA Korea 사용 방법 알아보기 ⇒ <http://www.ftakorea.co.kr>
- FTA pass 사용 방법 알아보기 ⇒ <http://ftapass.or.kr/index.do>

2. 검증대응 (STEP 9)

가. 개요

최근 FTA 사후검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추징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활용뿐만 아니라 원산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어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후검증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검증방법

원산지 사후검증 방식은 검증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검증은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

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검증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세관당국에게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정별 FTA 사후검증 방식]

협정	검증방법	검증주체
한칠레 FTA	직접검증	수입국
한싱가포르 FTA	직접검증	수입국
한EFTA FTA	제한적 간접검증(검증과정 참관)	수출국
한ASEAN FTA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先 수출국, 後 수입국
한인도 FTA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先 수출국, 後 수입국
한EU FTA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	수출국
한페루 FTA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수출국 및 수입국
한미 FTA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검증 및 공동검증)	수출국(섬유·의류는 수입국)
한터키 FTA	제한적 간접검증(검증과정 참관)	수출국
한호주 FTA	간접검증 또는 직접검증	수출국 및 수입국
한-캐나다 FTA	직접검증	수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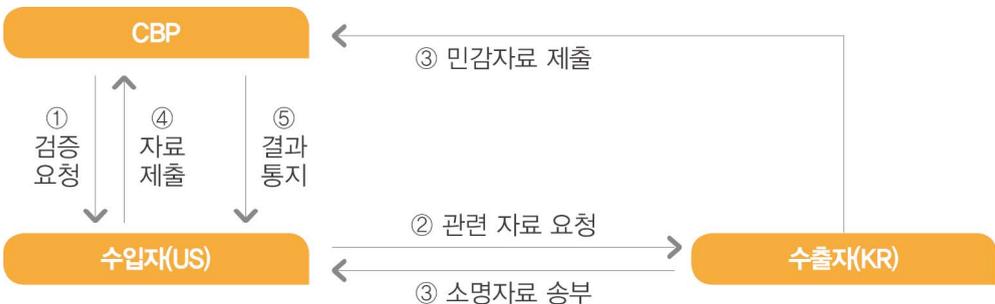
다. 검증대응

1) 개요

협정별로 검증방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본 매뉴얼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미 FTA(직접검증방식)와 한-EU FTA(간접검증방식)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실무

[한-미국 FTA 사후검증 절차]



가) 검증 요청

검증이 실시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관세당국(미국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수신하게 된다. CBP Form 28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재료명세서(Bills of Materials), 원가자료(Cost data), 생산 또는 제조 관련 자료(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등이 포함되며 물품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 및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CBP Form 2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BP Form 2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1. Date of Request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5b. Invoice No.	6. HTSUS Item No.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8. CBP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9. TO:		10. FROM: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input type="checkbox"/>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input type="checkbox"/>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input type="checkbox"/>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input type="checkbox"/>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from contain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input type="checkbox"/> E. See item 14 below.	
<input type="checkbox"/>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input type="checkbox"/> (1) packing <input type="checkbox"/> (2) commissions <input type="checkbox"/>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input type="checkbox"/> (4) assists <input type="checkbox"/>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14. CBP Officer Message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18. Team Designation	19. Telephone No.

CBP Form 28 (03/11)

- A) 1. Date of Request: 정보 요청일
- B)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 5. Entry., 5b Invoice No.: 소명을 요청하는 대상 물품의 확인정보
- C) 6. HTSUS Item No.: 수입자가 미국통관 신고 당시 사용한 HS CODE
- D) 9. TO: 정보제공요청서의 수신자·수입자 검증원칙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한 수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증요청
- 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질문
 - ㉠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수관계에 대한 소명 요청
 - ㉡ 검증대상 물품의 거래 시 포장비, 커미션 등과 같은 가산비용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
- F)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s): 거래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서류제출 요청
 -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계약 관련 서류
 -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설명 자료
 -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재료내역 관련 자료
 -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샘플(견본품) 제출 등
 - ㉤ 14번 항목 참조: 기타 별도로 소명하는 자료
- G) 14. CBP Officer Message: UKFTA(Korea-US) FTA(한-미 FTA), Verification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등의 문구가 등장할 경우 한-미 FTA 검증을 위한 정보요청서 등 원산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출을 요구

나) 관련 자료 요청

수입자는 해당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검증의 단초가 된다.

다) 소명자료 송부

소명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미국세관 담당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글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한-미 FTA 검증요청의 경우 원산지 증빙과 관련한 정보 외에도 해당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산요소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거래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함께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한 함께 준비해야 한다.

원산지와 관련한 기본적인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원산지 증명서(C/O): 최초 수출 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 ② 물품의 BOM
- ③ 원가자료(Cost Data)
- ④ 생산 또는 제조 관련 자료(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 ⑤ 운송 관련 자료
- ⑥ 기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자료들은 직접 미국세관으로 제출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검증에 의하여 실시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증을 실시하는 세관당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다.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확인하고, 검증대상 중에서 샘플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라) 자료 제출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세관당국에 필요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마) 검증결과 통지

검증자료를 회신 받은 수입 세관당국은 해당 자료의 검토를 토대로 검증의 결과를 수입자에게 CBP Form 29를 통하여 통지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결과를 유선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 제출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협정 적용을 유지하고 검증은 종료된다. 다만, 제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CBP Form 29를 통하여 예비결정 또는 최종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① 예비결정(Is Proposed)

특혜관세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예비결정이다. 수입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협약 적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확정된다.

② 최종결정(Has been ta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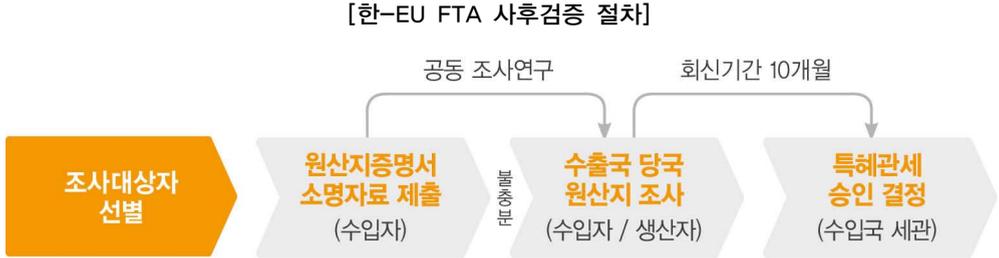
예비결정 이후 협정 적용을 불인정한다는 최종적인 확정 통지이다. 이러한 통지에 따라 협정세율 불인정 및 인하세액의 추징과 같은 조치가 따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정산 절차 이후에 이의 제기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CBP Form 2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i>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i>		1. DATE OF THIS NOTICE
3. CBP REF #		3. DATE OF IMPOSITION	4. DATE OF ENTRY	5. ENTRY NO.
6. IMPORTER/SELLER/SHIPPER	7. COUNTRY	8. CUSTOMS BROKER AND FILE NO.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10. TO		11. FROM		
12.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IES, — <input type="checkbox"/> IS PROPOSED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S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2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 <input type="checkbox"/> HAS BEEN TAKEN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A. <input type="checkbox"/> RATE ADVANCE B. <input type="checkbox"/> VALUE ADVANCE C. <input type="checkbox"/> EXCESS <input type="checkbox"/> WEIGHT <input type="checkbox"/> QUANTITY D. <input type="checkbox"/> OTHER (See below)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designations above)				
14. CUSTOMS OFFICER (name or type)		15. TEAM DESIGNATION		16. TELEPHONE

CBP FORM 29

3) 한-EU FTA 원산지 검증 실무



가) 서면조사의 통지

EU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세관은 서면 통지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한다. 그러한 조사의 통지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수출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①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② 조사기간 및 서면조사기간
- ③ 조사대상 수입물품
- ④ 조사 이유
- ⑤ 조사할 내용
- ⑥ 조사의 법적 근거
- ⑦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⑧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 ⑨ 그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서면조사 통지와 함께 해당 검증대상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의 정보, 검증대상 물품의 정보, 원산지정보, 운송과 관련한 정보 등을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에 의하여 요청받게 된다.

[서면조사통지서]

서면조사 통지서			
관리번호: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품목			
조사이유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질문서 별첨		
제출요구자료		제출기한	
담당공무원 직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구에 관한 법 제3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요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단계 적용배제 및 차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인)			

별첨			
제출요구 자료			
NO	구분	요청자료내역	비고
1	업체현황	업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 가능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원산지 신고서 및 수출신고 관련사항	C/O 사본 및 C/O 작성대상 사본	
		수출신고필증, B/L사본, 송품장, 패킹리스트 등 무역관련 재관서류	
		수출인 거래절차 및 수출계약서류 등 계약내용 확인 자료	
3	품목분류	공정등록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사본	
4	원산지 결정	수출자 및 생산자의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 FTA특별사행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 생산자 보관서류 일체)	
		HS번호 결정관련 자료	품목번호(하위)의 적정성
5	질문서 관련자료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및 질문서 상 요청자료	관계기관에 품목분류확인 받은 경우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안) 앞면]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출자·생산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구에 관한 법률(FTA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없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한-협례 FTA는 제외).

부문 I ▶ 거래자 정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아래 해당하는 유형의 <input type="checkbox"/> 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자 유형	유형별 설명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한 자		
<input type="checkbox"/> 수출자/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수출한 자이면서 생산한 자		
<input type="checkbox"/> 물품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하지는 않았으나 생산한 자		
<input type="checkbox"/> 원재료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를 생산한 자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괄) 명	(임원) 명	(기타)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외부민간부: 활용(관세사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내부) / 자체직업활용(성명, /) 원산지업무경력 이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없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나) 자료 제출 및 조사 연기신청

조사 통지를 받은 수출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간 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다) 보정 요구

자료를 제출받은 수출국세관은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서면조사 결과 통지

수출세관당국은 조사의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 협정 적용의 인정 혹은 배제 결정이 있을 수 있다. 협정의 배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수출관세당국은 해당 검증의 결과를 수입관세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수입관세당국에 대한 수출관세당국의 검증결과의 통지는 10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 참고자료

사후검증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대응하거나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참고 간행물: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http://fta1380.or.kr> 접속 ▶ FTA 활용 ▶ 사후검증대응 ▶ 검증대응 매뉴얼(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참고 간행물: FTA원산지 검증표준 준비자료 안내
<http://fta.customs.go.kr> 접속 ▶ FTA 자료실 ▶ E-Book-Zone ▶ E-Book(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전문가 상담: 국번 없이 1380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 전문가 상담:
 1577-8577 ▶ 관세청 FTA 사후검증지원센터
 042-481-3233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VI

Chapter

자주 묻는 Q&A



VI. 자주 묻는 Q&A



Q 1

FTA가 발효되면, 관세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FTA란 무역거래 시 체약 국가에만 배타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는 협정으로서 체약 국가와의 유형(상품)·무형(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의 거래 시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교역을 확대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등 무역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FTA 혜택 또한 협정상 규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FTA 상품무역협정에는 체약 당사국의 주력 산업 및 보호 산업 등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표1]과 같이 관세 양허범위를 품목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FTA 특혜세율 적용 방식도 협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FTA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관세 양허유형]

양허유형	상세 내용
즉시철폐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
단계철폐	FTA가 발효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
부분양허	FTA가 발효되어도 관세가 완전철폐되지 않고 실행세율의 일정 비율만큼 양허되는 품목
미 양허	FTA 특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품목

Q 2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증명의 발급주체인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는 국내 생산업체의 협력을 받아 원산지소명서를 발급하거나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소명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원산지소명서 작성 및 제공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질문 1) 업체B(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고 납품하여, 업체A(수출자)가 가공 없이 수출을 하는 경우 업체B가 업체A에게 상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원산지소명서까지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업체A(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에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업체B(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업체A에 제공 시 원산지소명서 내용만으로도 원가정보가 거의 노출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원산지(포괄)확인서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이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해서 보관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 판정서류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생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생산자는 동 원산지 소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출자가 단순히 수출대행을 하는 업체일 경우 원산지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원재료 소요량 및 원가 관련 자료 등 원산지 판정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자가 생산정보(원산지소명서, BOM, 원가자료 등)를 요청할 경우, 생산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만을 제공하고 투입 원재료 및 원가자료 등 원산지 판정 서류는 영업 기밀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 직접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자료는 수출자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번호를 기입하여 팩스로 제출하며, 이때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원산지소명서를 직접 제출하므로 수출자는 원산지소명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도 발급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보관 시에는 원산지 사후검증 시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부인되거나 FTA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3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무엇인데, 왜 우리가 작성해야 하나요?

원산지포괄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라 함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생산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급 및 유통과정에서 사업자 단위로 발급과 수취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 및 유통업자도 원산지확인서의 수취와 발급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FTA에서 말하는 역내산(=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재료 공급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수출업자는 완제품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공급업체에서 납품하는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수출자의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수월해지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관세가 절감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물량증대 효과로 이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수출업체와 국내 협력업체 간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해져, 국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Q
4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제도에 따른 심사기준에 맞춰 인증절차에 따라 업체가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심사기준

기준	확인사항
1.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보유 ①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원산지 증빙서류 확보 여부)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생산공정, 소명서 적정 작성 여부 확인) - 주요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④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여부
2. Specia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②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항목별 점수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함
3. 서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4. 법규준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無 ①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법 제13조 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③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이 없는 자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심사기준

기준	확인사항
1. 원산지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원산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확인)
2. Specia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②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항목별 점수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3. 서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
4. 법규준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근 2년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최근 5년간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인증수출자 신청 및 인증 절차

업무절차	신청인
<p>1. 인증 신청 / 접수(UNI-PASS)</p> <p>↓</p> <p>2. 신청서 배부</p> <p>(업체별) ↓ (품목별)</p> <p>본부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p> <p>↓</p> <p>3. 서면 심사 (필요 시 보정요구 / 현지확인)</p> <p>(인증 요건 충족)</p> <p>↓</p> <p>4. 인증서 교부(20일 이내)</p> <p>↓</p> <p>5. 인증변경 신고 / 수리(7일 이내)</p> <p>↓</p> <p>6. 유효기간(5년) 연장신청 및 인증 <개정 2015. 5. 18></p> <p>.....</p> <p>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p> <p>↓</p> <p>인증 요건 미충족 시</p> <p>↓</p> <p>8. 시정명령(30일 이상)</p> <p>↓</p> <p>9. 인증 취소(청문)</p>	<p>1. 구비서류</p> <p>① 인증신청서</p> <p>② 주요 수출(생산)품목의 원산지소명서</p> <p>③ 원산지소명서 기재 내용 입증서류</p> <p>- 원산지(포괄)확인서 등</p> <p>- 국내제조확인서 등</p> <p>④ 기타 자료</p> <p>- 시스템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업무 매뉴얼 등</p> <p>3. 보정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p> <p>4. 인증서 교부</p> <p>5. 인증사항 변경신고(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 시)</p> <p>6.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연장 신청</p> <p>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p> <p>8. 기간 내 시정</p> <p>9. 청문 시 소명자료 제출</p>

활용 Tip

■ **인증수출자, 한-EU FTA 활용 전에 미리 준비하여 취득하자.**

-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인증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EU로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EU 측 바이어와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인증수출자 인증기준 중 원산지관리 전담자(Specialist)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외부전문가(관세사 등)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업체 내부전문가를 지정할 경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이들 항목을 점수로 환산한 총합이 일정 점수 이상 되어야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Q / 5

원산지 사후검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산지 사후검증 방식은 크게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며, FTA 협정별로 검증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캐나다	아세안, 인도, 페루	EFTA, EU, 터키
검증방식	직접검증(호주의 경우 간접 병행)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원칙: 간접검증
검증주체	수입국세관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입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참관)

간접검증은 수출국세관당국이 수입국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접검증은 수입국세관당국이 수입물품 중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선별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제출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서류검토 결과 이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수출국세관당국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출국세관당국은 수입국의 조사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출자를 방문하여 원산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수입국세관당국에 통보합니다. 통보 내용에 따라 수입국세관당국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인정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직접검증은 수입국세관당국이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접검증 절차는 우선 수입국세관당국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규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자,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수입국세관당국은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서면조사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수입국세관당국이 직접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하는 현지방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국은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의사를 방문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방문조사가 종결되면 수입국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자격 여부에 대한 판정내용을 서면으로 상품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통보합니다.(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에게 통보)

활용 Tip

■ 원산지 직접검증(한-미 FTA)

-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과 함께 수출자·생산자 등의 사업장 방문 및 검증지원 가능
-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Q / 6

뒤늦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행, 사후적용이 될 수 있나요?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시 또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수출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비교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하여야 하나,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후적용이라고 합니다.

한-인도 CEPA 협정상,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환급을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인도 측에서는 사후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인도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한-인도 CEPA의 경우 인도 측에서도 동일하게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CEP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수출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의 2항에 따르면

한-인도 CEPA 협정 제4.8조 제2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그 상품의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인도에서는 사후관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인도에서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이 거절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기 협정문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상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협정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사후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도 측에서 사후적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 수출자가 인도 수입자에게 소급발급을 통한 사후적용을 약속하는 경우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점에 사후적용을 배제한 한-인도 CEPA 적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신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개월입니다.

활용 Tip

■ 한-ASEAN FTA, 한-인도 CEPA 사후적용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발급인지 소급발급인지의 기준은 실제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을 신청한 날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한 날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및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모두 1년이다.
-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경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당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후적용이 불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Q 7

저희는 마커를 제조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마커의 HS CODE는 제9608.20-0000호이며, 이전에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했고, 판정 결과 원산지 충족이 되어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금번 사세 확장으로 미국과 EU로 수출이 진행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한-ASEAN FTA 원산지 판정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무방하나요?

A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 협정이라 하더라도 HS CODE(HS 6단위 기준)별로 상이하며,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품목(HS 제9608.20-0000호)의 경우 대상 협정별로 다음과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한-ASEAN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미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9608,60부터 9608,99까지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3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한-EU FTA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편축과 편축 포인트는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한-ASEAN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변경)과 부가가치기준(역내 부가가치 40%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HS 2단위 변경)과 세번변경기준(HS 2단위 변경, HS 제 9608,60호부터 HS 제9608,99호 제외) + 부가가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협정별로 각각 원산지결정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ASEAN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한-미 FTA 및 한-EU FTA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각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EU FTA,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시고, 사후 원산지 조사에 대비하여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품목의 HS CODE 6자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소명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도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제2106.90-99호입니다. 이 품번의 인도 측 기본세율은 150%입니다. 그런데 한-인도 CEPA 협정문상 인도 측 양허표를 보니 기준세율은 30%이며, 양허유형이 exc입니다. exc는 관세인하 또는 철폐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미 양허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물품을 인도에서 수입할 때 기본세율인 150%가 적용되는지 기준세율인 3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FTA 협정세율(CEPA 협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문의 품목과 같이 미양허물품인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 세율을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기본세율인 150%의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한-인도 CEPA 협정문상의 기준세율은 각 상품의 관세철폐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2006년 4월 1일자로 적용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즉 HS CODE 제2106.9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30%를 기준으로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관세가 양허되는 것인데, 미 양허물품으로 협정 적용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수입통관 당시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며, 따라서 기본세율인 150%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협정 발효(2010.01.01.)와 동시에 우리의 對 인도 수출액을 기준으로 75%는 발효 즉시 8년간 관세가 철폐되고, 10%는 8년 또는 10년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됩니다. 한-인도 CEPA 양허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용 Tip

■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CEPA 협정 또는 APTA(아-태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어떤 협정을 적용하나?

- APTA 협정과 한-인도 CEPA 협정은 별개의 협정으로 각각의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수출입품이 양 협정에서 정한 양허품목에 해당할 경우 수출입자가 유리한 협정으로 선택하여 협정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관세율

양허유형	인도 측	우리 측
즉시철폐	무선통신기기부품(0~12.5), 비디오카메라(0~12.5), 냉방기부품(0~12.5)	나프타(1), 석유화학제품(3~8, 선철(2), 폴리카보네이트(6.5~8)
5년 철폐	신문용지(12.5), 합성고무(10~12.5, SBR), 의료용 전자기기(12.5), 합성수지(12.5), TV영상모니터(12.5) 등	원유(5), 윤활유(7~8), 20톤 초과 화물자동차(10), 대리석(8), 초음파 영상진단기기(8), 견방사(8) 등
8년 철폐	선박(12.5), 볼 베어링(12.5), 건설중장비(0~12.5), 카메라(12.5) 등	페니실린(6.5~8), 모사(8), 동괴(5), 비공업용 다이아몬드(5), 엑스선관(8) 등
8년 내 1~5%로 인하	엔진결합발전기(12.5), 기타 자동차용 부품품(12.5), 자동차 카스테레오(12.5) 등	자동차 휘발유(5) 등
8/10년 내 50% 감축*	기어박스(12.5), 접착제(12.5), 냉장고(200 리터 이하 12.5) 등	훈방면사(8), 배전 및 제어기 부품(8) 등
양허제외	TV음극선관(12.5), 승용차(100), 페놀(12.5), 전자레인지(12.5) 등	일부 순면사(8), 경유(5), 등유(5), 제트유(5), 병커유(5) 등

* 인도는 10년 내, 한국은 8년 내 50% 감축



농산물을 가공한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농산물과 농산물을 제조, 가공한 물품의 품목분류 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원료별 또는 가공도별로 분류됩니다. 원료별로는 크게 육류, 어류, 낙농품, 채소, 과일, 곡물로 분류됨을 품목분류의 기본으로 합니다.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의 가공식품은 재료와 가공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재료와 가공에 따른 품목분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표는 주 규정 및 호의 용어를 확인한 후 HS CODE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가공	분말	기름	육류 포함	조제
채소	제7류	7류, 11류	15류	16류	20, 21, 22류
과일	제8류	11류	15류	16류	20, 21, 22류

제7류에 분류되는 채소는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물에 삶거나 찐 것, 건조한 것이 분류됩니다. 제0709호의 기타 채소에는 버섯, 고추, 호박, 가지, 올리브,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등이 분류됩니다. 채소의 조제품은 주로 20류에 분류되는데, 채소를 식초나 설탕으로 처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면 제20류에 분류됩니다.

제8류에 분류되는 과일은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 주의할 것은 올리브, 토마토는 제8류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것은 제8류에서 제외되어 11류에 분류됩니다. 통조림에 넣은 과일은 제8류에 분류되지만, 감미료가 첨가되어 조제한 경우에는 20류에 분류됩니다. 과일주스는 2009호에 분류되고, 알코올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음료는 22류에 분류됩니다.

무엇보다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나 세관 등 품목분류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0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1차산품 공급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원산지확인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FTA 체결국가로 수출하는 식품의 경우 한국산임을 충족하기 위해 각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는 것이 어려워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서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산지확인서에 준하는 서류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관원이 발급한 서류를 FTA 원산지로 인정해왔으나 이번 관세청 고시(제2015-20호) 개정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증(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 1개 서류만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실무자를 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유자차

발 행 일 2015년 10월

발 행 인 김재수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www.seilfocus.com

Tel. 02-2275-6894

문 의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Tel. 061-931-0871

이 책의 저작권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있습니다.
본지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